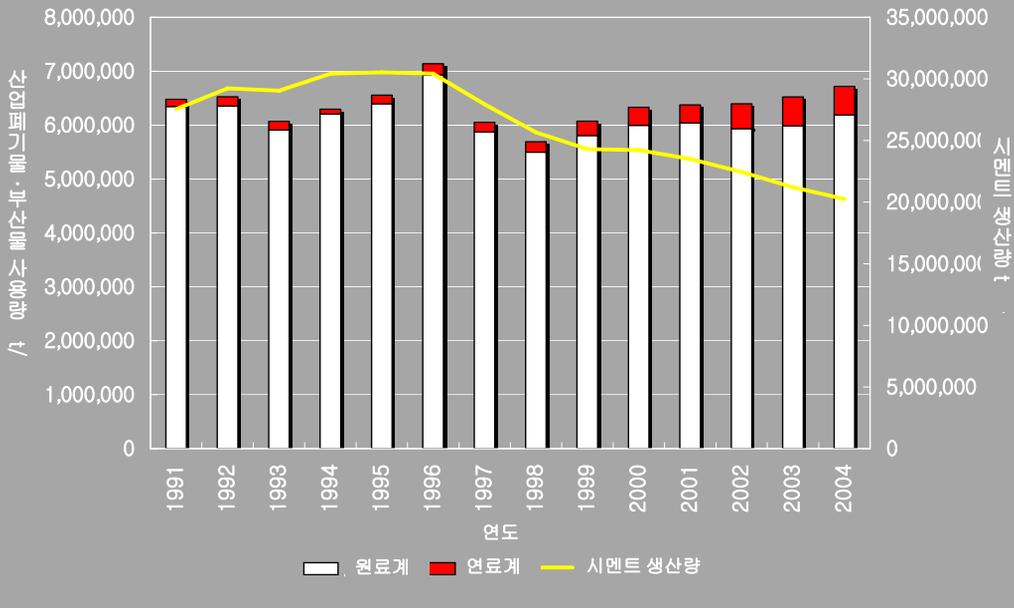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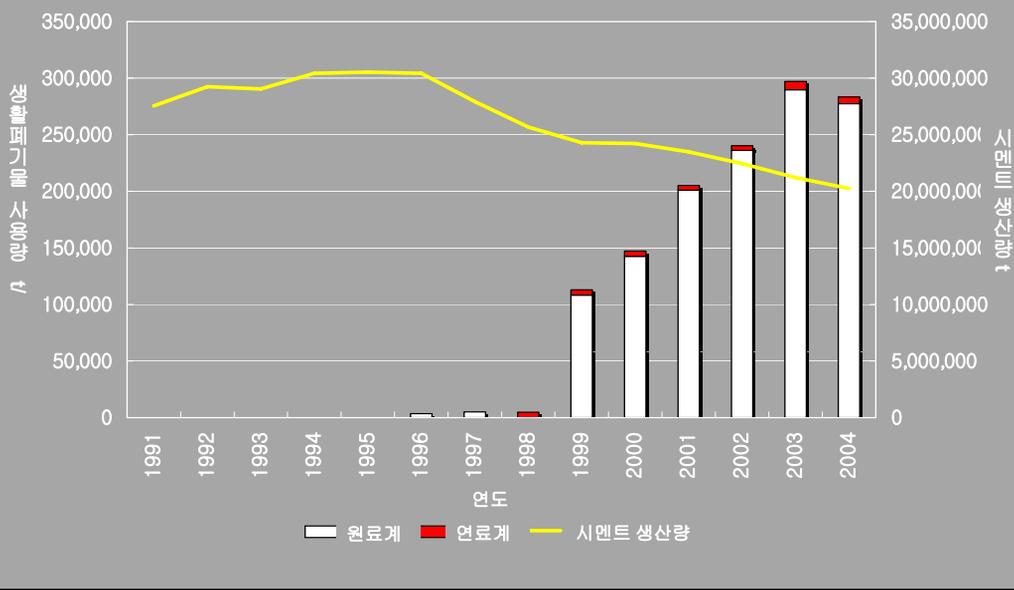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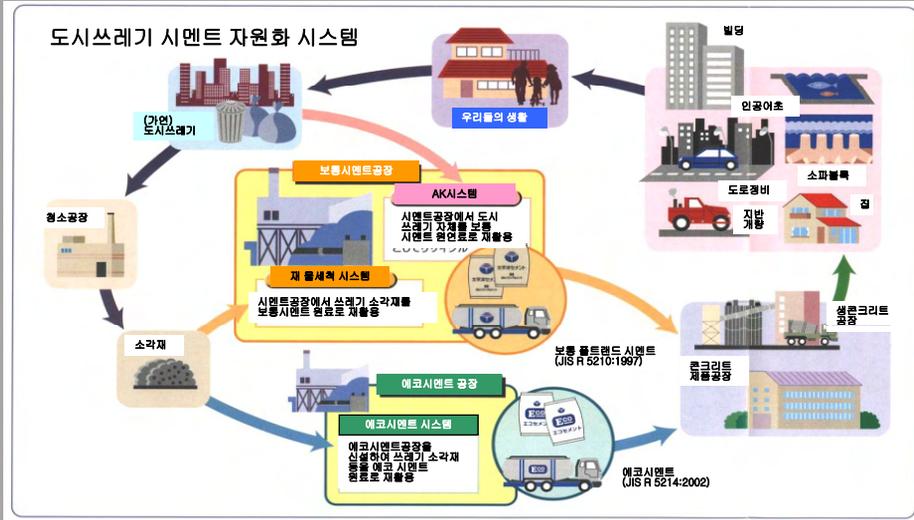
## 산업폐기물·부산물물의 재자원화(당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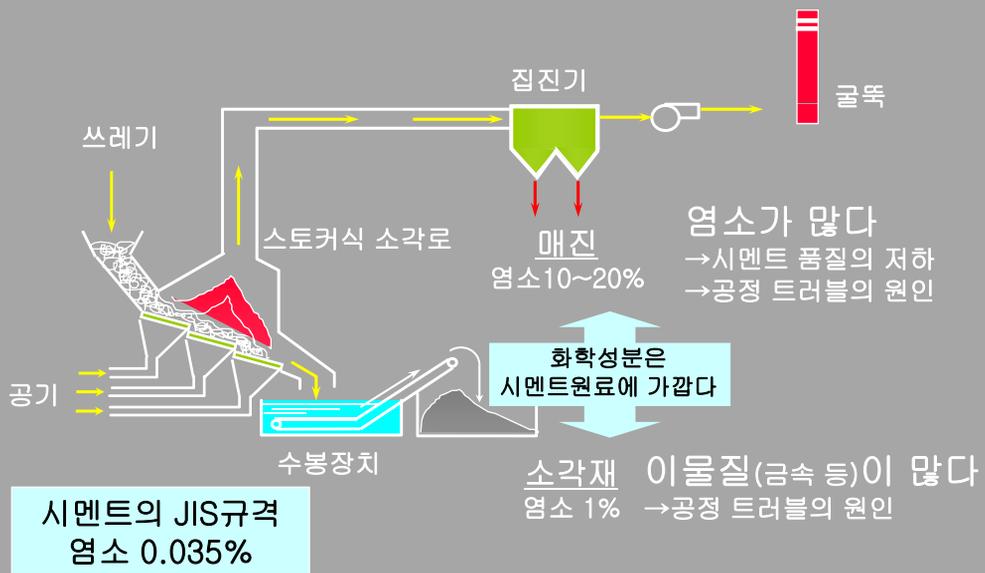
## 생활폐기물의 재자원화(당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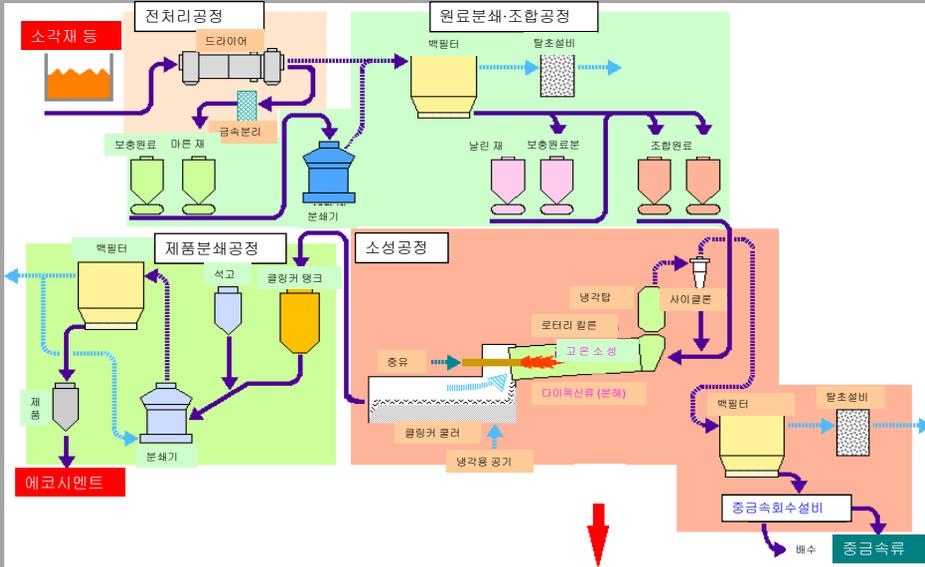
# 3가지 도시쓰레기 시멘트자원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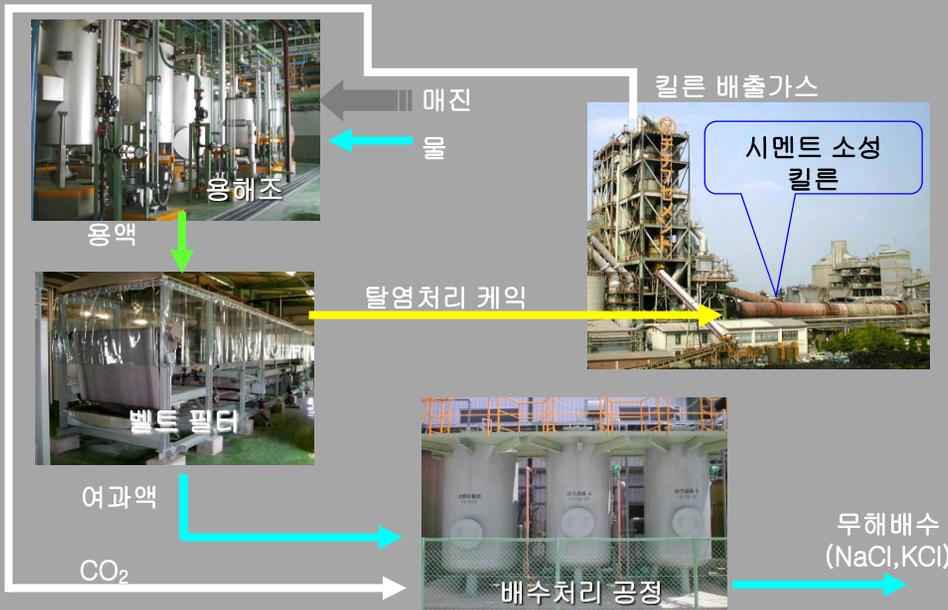
## 소각재와 매진



## 에코시멘트 제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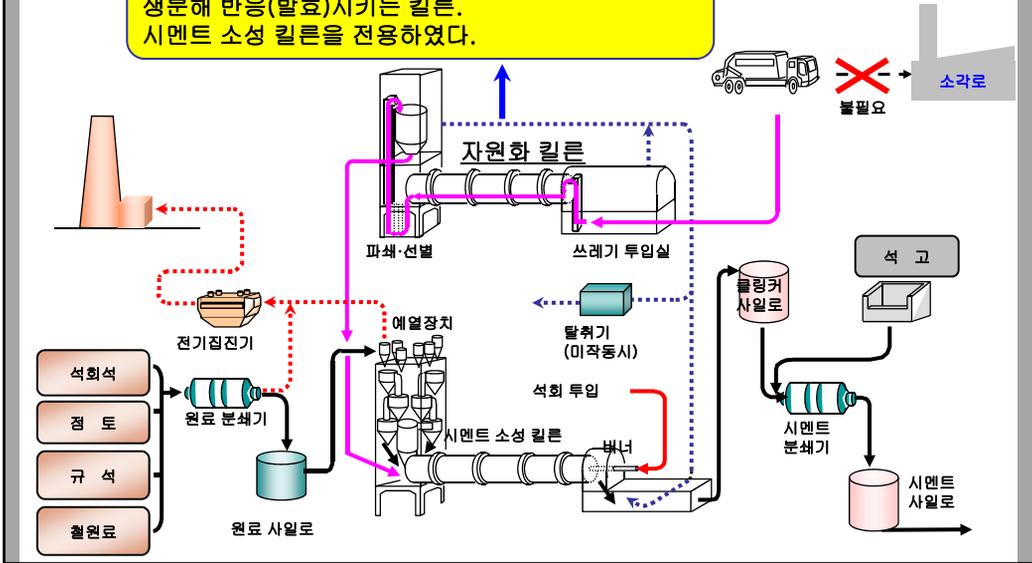


## 매진 물세척 시스템



## AK시스템의 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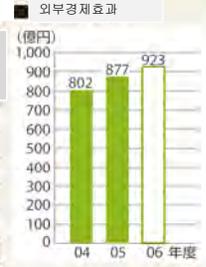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나 사업용 일반쓰레기 자체를  
생분해 반응(발효)시키는 킬른.  
시멘트 소성 킬른을 전용하였다.



## 3가지 도시쓰레기 자원화(VTR)

# 타이헤이요시멘트의 환경부하 폐기물 사용에 의한 외부 경제효과

impact	inventory	시멘트 1t 당 (kg) *는 천t/년간			Inventory 설정시장가 격(엔/t)	시멘트 생산수 량(만t)	외부 경제효과 (억엔)
		VPC	전 시멘트	감축량			
지구온난화	CO <sub>2</sub>	870	718	152	818		26
에너지자원 고갈	원유	37	31	6	18,400	2,066	23
광물자원 고갈	천연원료	1,580	1,153	427	1,000		88
최종처분장 고갈	폐기물	0	253	253	15,000		784
	폐기물(환경사업)	-	17*	-	-		3
합계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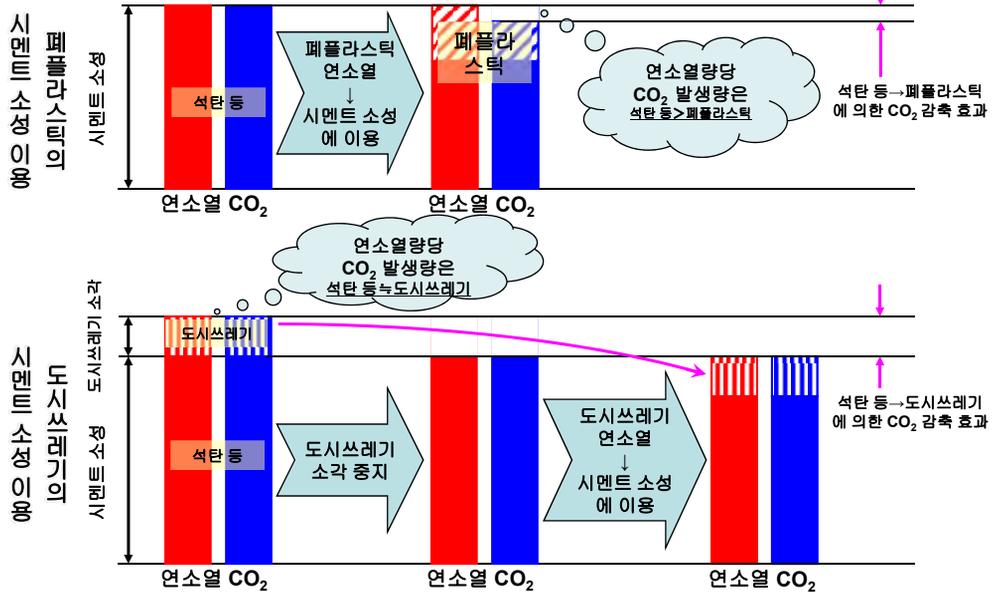
## <<외부 경제효과란>>

당사에서 폐기물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 전체가 받을 환경 영향 (환경보전물량효과)에 2000년도 시장가격을 곱해서 경제효과를 계산

주요 시장 가격으로서는

- CO<sub>2</sub>: 탄소세 3,000엔/t
- 원유: 수입가격
- 천연자원: 실제 구입가격
- 폐기물처리비용: 수도권 관리형 처분장 처리 비용 등

## 에너지 대체 폐기물 이용에 따른 CO<sub>2</sub> 감축



제10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일본 및 타이헤이요(太平洋)시멘트의  
에너지절약과 환경대응

2008년 12월5일

타이헤이요시멘트주식회사

환경사업컴퍼니

사업추진부 부부장

다마시게 다카미키(玉重 宇幹)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ssion II-1> : 【일본측 투자전문위원회 활동 보고】

## 투자전문위원회(일본측) 중간보고

(株)野村総合研究所 部長  
高田 伸朗



신산업무역회의  
투자전문위원회(일본측) 중간보고

2008년 12월 5일  
(주)노무라종합연구소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목 차

1. 지금까지의 검토 경위
2. 대한투자의 장애요인
3. 대한투자의 비관세 장벽
4. 대한투자 촉진책
5. 향후의 대처 방향

## 지금까지의 검토 경위

- 기본 입장
  - 투자 확대 및 활성화 상황 하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주요 3개 사항(애로사항, 비관세 장벽, 사례공유)에 집중한다.
  -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된 Business Summit Round Table(BSR) 활동과 연계한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아소라파즈시멘트 / 아소 유타카 사장
  - 부위원장: 하쿠호도 / 토마리 미쯔오 상무집행이사
  - 주요 위원사: IHI, 아사히화학, 이토추, 가와사키중공업, 캐논, JTB, 스미토모상사종합연구소, 타이헤이요시멘트, 도레이, 노무라종합연구소, 미츠이스미토은행, 미츠이물산, 미츠비시상사, JETRO, 닛쇼, 고쿠시칸대학 외
- 검토 경위
  - 08년 9월 26일 제1차 회의
  - 08년 11월 7일 제2차 회의

## 제1차 회의 시의 검토사항

- 9월 26일 개최
- 의제
  - 주한 일본계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 한국의 노동환경
  - 한국후지제록스의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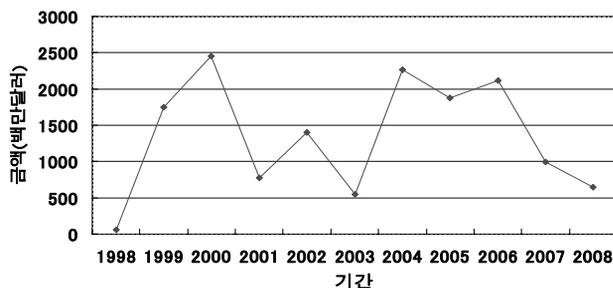
## 제2차 회의 시의 검토사항

- 11월 7일 개최
- 의제
  - 한국사회 특징 및 교육·고용의 국제화 실상과 전망
  - 비관세 장벽
  - 규제완화 현황
  - 투자협정 평가
  - BSR 현황
  - 한국 여행업의 사례 연구
  - 한국 헬스케어산업의 현황/투자기회와 인재교류

##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동향

-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중심
-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가 중심
- 서비스 분야의 투자도 증가
- 규제완화·제도인프라 정비가 외자를 유인

일본의 대한투자금액 추이



주) 2008년은 상반기만 반영  
출처: 지식경제부

##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평가

■ 평가... 종래의 투자보호협정과 다르게 높은 수준의 내용

- ① 투자허가 단계의 내국민 대우 규정 (제2조)  
설립 전의 최혜국 대우, 설립 후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에  
더하여 설립 전의 내국민 대우를 새롭게 부여
- ② 광범위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제9조)
  -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
  -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현지조달 의무’
  - 자국 영역내에서 생산된 물품, 제공된 서비스의 우선 구입
  - 수출입 균형 요구 금지
  - 일정수준의 연구개발, 자국민 고용의무 부여 금지 등  
그 밖에 임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규정(제8조 3항)
- ③ 예외조치의 점진적 감축 및 제거노력 의무 규정 (제5조)
- ④ 현행 외자 규제에 관한 현상유지 의무 (제5조) 등

## 대한투자를 가로막는 요인

- 한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인센티브 위주.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중시.
- 대한투자에 있어
  -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제도·규제·관행이 비관세 장벽이  
되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한국의 비관세 장벽

분야	문제점
고용·노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에게 부담이 큰 퇴직금 제도</li> <li>●비정규직 근로규정(3년 이상 근속할 경우 일반사원과 동일한 보험·상여 지급 의무)</li> <li>●국가유공자 고용 의무</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송금 규제</li> <li>●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비율 의무 부과</li> </ul>
지적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내 모조품의 제조 판매</li> <li>●퇴직중업원에 의한 지적재산의 유출</li> </ul>
외자참여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방송, 어업, 해상·항공수송, 전기·가스, 전기통신 등 분야의 외자 규제</li> <li>●외자참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li> </ul>
수출입 규제·관세·통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화학물질의 수입쿼터(연간100g)</li> <li>●엄격한 원산지 표시(Assembled by ○○○와 같은 표기가 인정되지 않음)</li> </ul>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비용의 특별소비세(자동차, PJTV, 플라즈마 모니터 등)</li> </ul>
공업규격 기준안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독자적 안전 인증</li> <li>●다양한 마킹(기계, 전기안전, EMC, 전파·텔레콤 마다 별도의 마크)</li> </ul>
제반 제도·관행·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설정(타올, 세포직물, 양말 등)</li> <li>●선물거래 규제(국내 중개업자 경유 의무화)</li> </ul>
정부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소시엄 리더의 현지기업 지정</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크린 쿼터 제도</li> </ul>

# 고용·노동 분야의 과제

## 노동 비용

-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 시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자기 사정·회사 사정·정년퇴직을 불문하고 지급해야 함.
- 고액의 복리후생비 부담(교육비·의료비·미사용 휴가 정산)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

## 노동조합

- 복수조합제에 관한 법률 시행이 지체되고 있음.
- 노사교섭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파업 중 조합원의 임금은 모두 회사측이 부담

## 지적재산권 분야의 과제

-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모조품, 의장권 침해 등이 여전히 존재.
- 기술제휴 등 협력·연계 시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 (특허료·노하우 비용 등의 지불 등)
- 합작회사가 취득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
- 퇴직자에 의한 기술유출·정보누설 문제가 발생

## 금융 분야의 과제

### 기업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 해외로의 자금 송금 규제·원화 반출 규제
- 상쇄거래(netting) 금지
- 외화유입에 대한 과세, 과소자본세제 등 역행하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가 존재함.  
→ 일본계 금융기관의 한국내 사업활동이 제약되어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

대한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 관점

- 사업채산성 확보(소규모 국내시장)
- ‘모노즈쿠리’에 대한 의식제고와 인재육성(국가차원)
- 제3국에서의 연계를 포함한 협력관계 구축

2. 대처 분야

- 비관세 장벽 해결 뿐 아니라,
- 서비스 분야의 상호연계
- 중소기업 \*
- 인재교류 가 중요
  - \* M&A/산업 클러스터 활용/추진,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한국 교육시설 설치

## 비관세 장벽의 해결 고용·노동 분야의 과제 해결방안

개념

-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구미 등의 산업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를 통해 효과가 상승함.
- 한국기업 산업단체들과도 연계가 가능함.

해결방안

- 종업원 지주제도(우선주 할당) 이용
- 종업원 규칙 등의 스탠더드(규범) 구축
-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에 경제특구 개념(규제 완화)을 적용하고 기존의 노사 관행을 탈피하는 방안을 구축

비관세 장벽 해결  
지적재산권 분야의 과제 해결방안

개념

- 한국측에게 지적재산권 제도 운용의 개선이 필요
- 한국 국민들에게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향상이 필요

해결방안

- 특허출원제도 개선 요망(외국어 출원 허용 등)

비관세 장벽 해결  
금융 분야의 과제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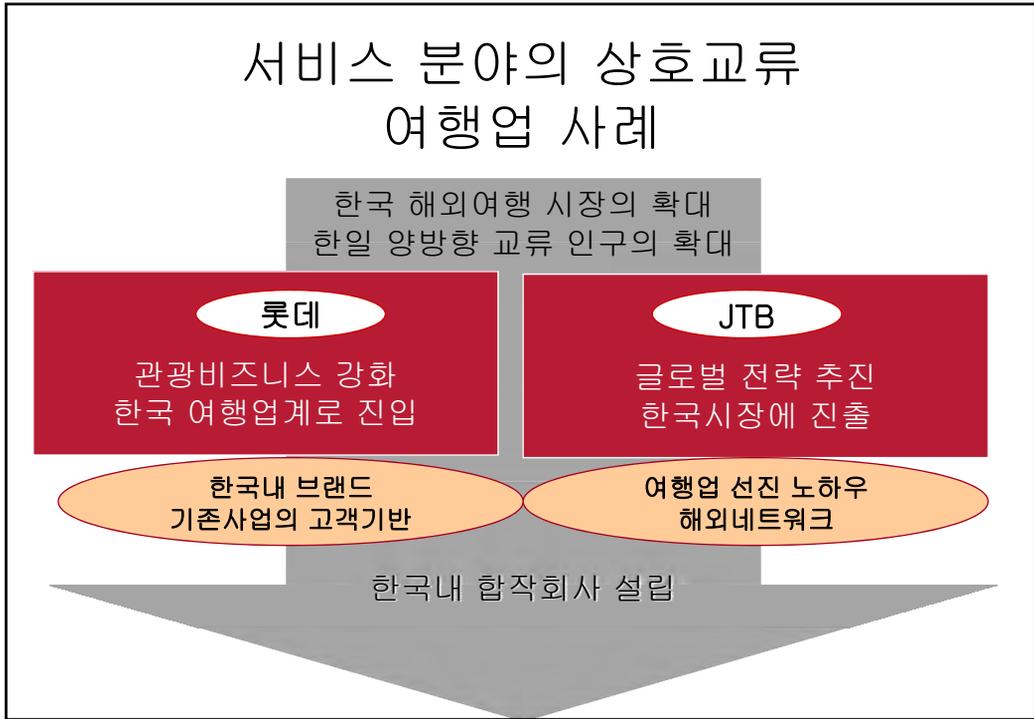
개념

- 글로벌 기업의 사업활동에 관한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
- 외국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해결방안

- 해외송금 규제 완화
- 상쇄거래(netting) 규제 완화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비율의 철폐

# 서비스 분야의 상호교류 여행업 사례



## 롯데JTB 과제와 향후 사업전개 방향

### 1. 한국 여행업계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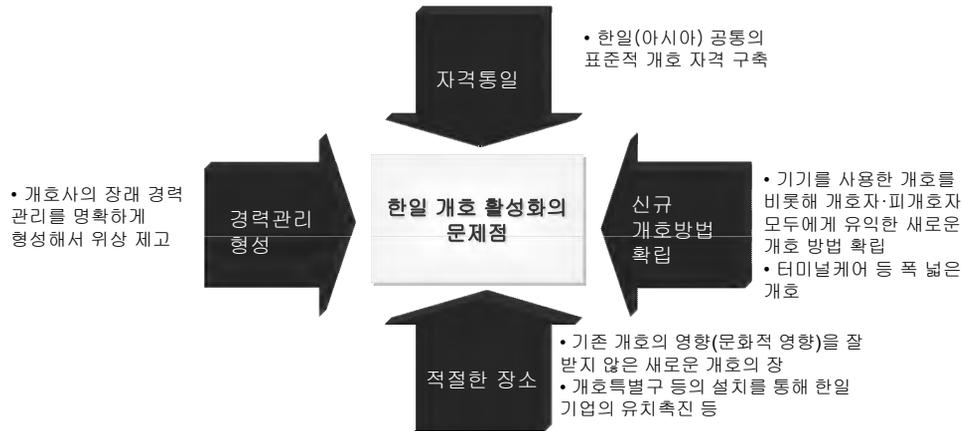
여행/관광 관련 인재육성 추진(자격인정제도 없음: 여행업무 취업주임자 등,  
자격 공통화: 여행통역안내사·가이드)

### 2. 향후 사업전개 방향

- (1) 한국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양방향 여행사업, EC사업 및 WEB판매 사업을 종합적으로 전개함.
- (2) 인바운드는 기존 오퍼레이터와의 거래관계를 존중하면서, 단체 수요를 중심으로 신규시장 개척을 도모함.
- (3) 아웃바운드는 WEB을 통한 판매를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전개에 있어 롯데닷컴사로부터 여행사업을 계승하여 신속히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기반을 조속히 확립한다.
- (4) EC, 교류비즈니스, 전세편 등 특색을 내세운 다방면적 전개를 하면서 당분간은 롯데그룹의 출장, 회의 등 법인수요 흡수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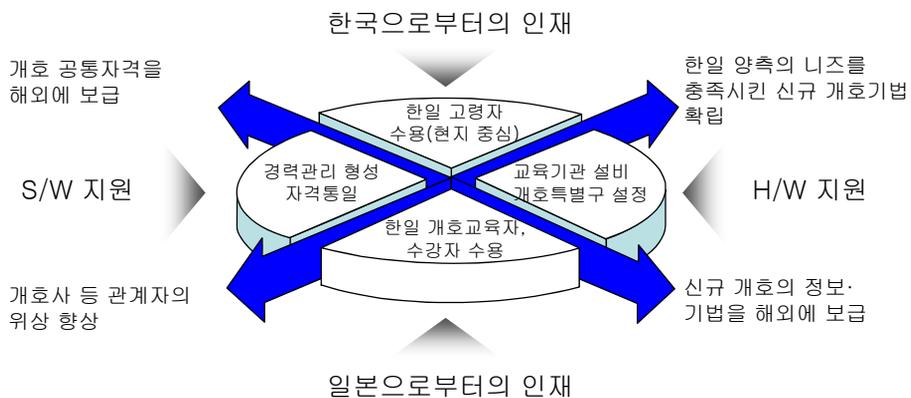
# 서비스 분야의 상호교류 개호산업 가능성(1)

한일 개호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서비스 분야의 상호교류 개호산업 가능성(2)

한일 개호활성화 프로그램과 정부지원안



# 인재교류 촉진

## 현황 인식

- 한국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및 이직률
- 서울 외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큼
- 자격의 상호인증은 초급 IT기술자 뿐이며 아시아지역의 자격공통화 추세에 비추어 한일은 뒤처져 있다. (태국·중국에 비해)
- 인재교류에 관한 한일 간 인식 차이  
일본측: 청년층의 인재교류에 관심  
한국측: 중장년 일본인 기술자 및 기능자 수용에 관심

## 개 념

- 대졸 수준의 고수준 고용시장 개방이 필요
- 한일은 아시아의 인재교류 모델이 되어야 함.

## 대처방향

- 유럽의 '블로냐 선언'과 같은 한일 대학간 학점호환제도
- 인턴십제도 활용
- 자격의 상호인증 추진(IT·개호 등)

‘아시아 인재(人財)자금 구상’을 활용한 사업 추진

## 한일투자협정: 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위해 (1)

최근의 투자협정 내용에서 판단하여 이하의 두 가지 점을 제안.

(1) '예외 없는 최혜국 대우'로 변경

일본·캄보디아투자협정 (2007년 6월 서명)	한일투자협정 (제22조)
<p>'예외 없는 최혜국 대우'에 FTA 체결국을 포함하고 있다.</p> <p>*'예외 없는 최혜국 대우'는 한미FTA (2007년 6월 서명)의 '투자·서비스에 관한 장'에서도 규정 →체약국이 다른 FTA에서 한미를 상회하는 대우를 제공할 경우, 동 수준의 대우가 상대 체약국에 자동적으로 반영</p>	<p>'각 체약국이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정,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갖게 되는 특혜적 대우를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재산에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p>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예외 없는 최혜국 대우'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일투자협정: 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위해 (2)

### (2) 새로운 조항의 추가

추가조항	목적	비고
◇umbrella 조항	국가가 투자자에게 한 약속의 준수 의무	
◇public comment 실시, 부패방지 노력의무 규정	투자활동 원활화를 위한 규정으로서	예) 일본·캄보디아투자협정(제9조) '각 체약국 정부는 긴급한 경우 또는 순수하게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설정·개정·폐지하기 전에 대중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라체트' 규정	'현상유지 의무' 보다 자유화를 추진	일단 규제를 완화시킨 다음에는 자유화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며 한미FTA에 적용되어 있다.

## 향후의 대처 방향

- 3월 제3차 투자전문위원회 개최
  - 경제자유구역/전용 공단
  - 지적재산권
  - 금융
  - 인재교류
 등의 구체적 전개방향에 대해 검토
- 4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보고·제언

주한 일본계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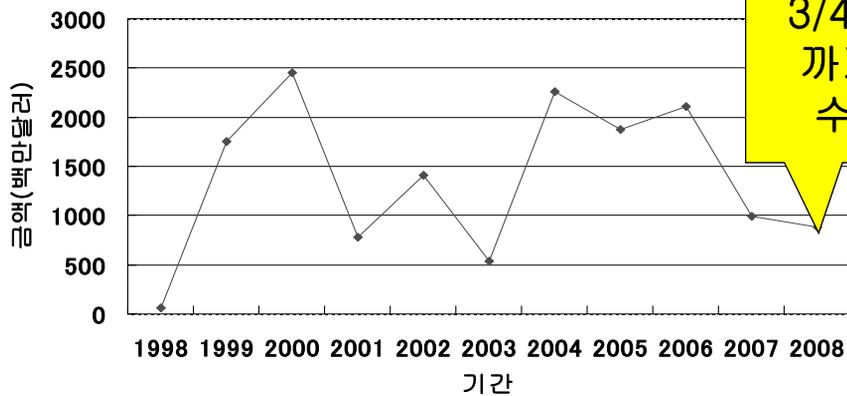
JETRO서울센터 副所長  
朝武 直樹



주한 일본계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JETRO SEOUL CENTER  
도모타케 나오키(朝武 直樹)  
2008년 12월 5일(금)

일본 ⇒ 한국 투자금액 추이



출처: 지식경제부

# 일본기업 그린필드형 투자가 주류



《배경》

- ◆한국은 IT·전자 분야 완성품의 세계적 생산거점
- ◆한국정부의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정비가 외자를 유인

제조업이 주체

서비스 분야에도 파급

한국의 규제완화방안  
제도인프라 정비

제도인프라의 집대성

2003년 한일투자협정  
2004년 한일세관상호지원협정  
2005년 한일사회보장협정

한일FTA 협상 재개 ⇒ 체결

## 기존의 한국 외자유치 정책

= 인센티브 위주!

SJC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적  
'기업 투자의 판단 기준은  
인센티브보다 시장'!



## 한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한국기업  
(완성품 메이커 등)

부품·소재 외자유치  
등에 대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유치

한국정부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증가  
중 하나의 요인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접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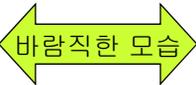
## 노동·노사 문제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게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문제 ! 투자처로서 부정적 이미지

조속한 해결을 기대

《예》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 문제

노동·노사관계의 선진화



글로벌 스탠더드 달성

## 금융 분야

외환위기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

경영 투명화

외환 등 대외적 거래규제 완화 등



외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활동



해당국 투자활동 활성화

한국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결실을 맺음

## 금융 분야의 개별 과제

- ①외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신규)
- ②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의 손금처리 (신규)
- ③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완화 (신규)
- ④해외송금의 규제완화 (계속/장기)
- ⑤유가증권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계속/장기)
- ⑥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 개방 (계속/일부 수용)
- ⑦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대출규제 개선 (계속/장기)
- ⑧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 철폐(계속/장기)

## 해외송금의 규제완화 (금융 분야)

###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는 해외자금 송금시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출장시의 대체정산’ 등 기본적으로 해외송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송금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송금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은 등 규제가 엄격하다.

### 《개선 요망》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해외송금은 필수이며,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해외송금의 조속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또한 지난 번 답신(장기 검토)에서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서류제출을 규정한다고 했으나 송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타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 철폐 (금융 분야)

###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 은행은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용자는 용자대상의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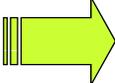
한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본래 정부에 의한 정책용자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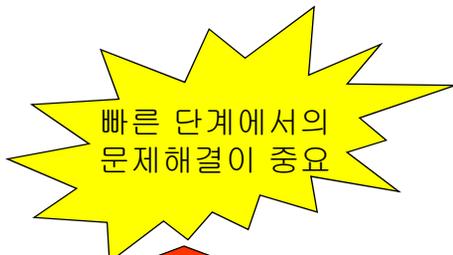
또한 금번에 중소기업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의 정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매금융(wholesale)에 특화된 은행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영업중인 외자계 중소기업의 체력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

### 《개선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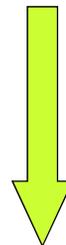
지속적으로 철폐를 위한 개선을 요청하며 지난 번 답신(장기 검토)에 대한 한국측의 검토상황을 알려 주기 바란다.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문제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응



운영적 측면에 개선  
여지



제도적 측면의 개선



##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별과제-1

- ①국민의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향상 (계속/대응 완료)
- ②모조품·해적판에 대처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의 지원 등(신규)
- ③영업비밀 보호, 정보누설 방지에 관한 사업자의 계몽 (신규)
- ④세관에서의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적발능력 강화 (계속/장기)
- ⑤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유 통지의 응답기간 (계속/장기)
- ⑥복수의 복수청구항 용인(계속/장기)
- ⑦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계속/일부조치 완료)

##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별과제-2

- ⑧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보호 (신규)
- ⑨외국어 출원에 대해 (계속/장기)
- ⑩PCT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에 관한 절차 보정 범위 (계속/장기)
- ⑪상표출원 조기심사제도 도입 (계속/곤란)
- ⑫상표 선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시기 (계속/곤란)
- ⑬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제한에 대해(계속/장기)
- ⑭특허 등의 유효·무효를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 (계속/곤란)
- ⑮침해 입증의 간소화 (계속/장기)

## 지적재산 의식 향상 (지재분야)

### 《현황과 문제점》

남대문시장 등 도처에서 당당히 모조품을 팔고 있으며, 소비자도 저렴하다면 불법제품도 이용하고 있는 실태.

모조품에 대한 불법의식이 낮으며 제조성분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모조품에 의한 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나 모조품의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 《개선 요망》

1. 모조품 등의 판매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보 발신
2. 모조품에 의한 위험성 및 건강피해 등에 대하여 TV 등 주요미디어에서 다루어 의식 확산
3. 초·중학생 등에게 제공 가능한 부교재 제작

### 《비고》

2005년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측은 '대처 완료'라고 회답

## 외국어 출원에 대하여 (지재분야)

###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특허출원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①파리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1년 기간이 종료하기 직전에 특허출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단기간 내 번역의 필요성, ②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을 출원 후 보정해야 할 경우에도 추가 불가.

### 《개선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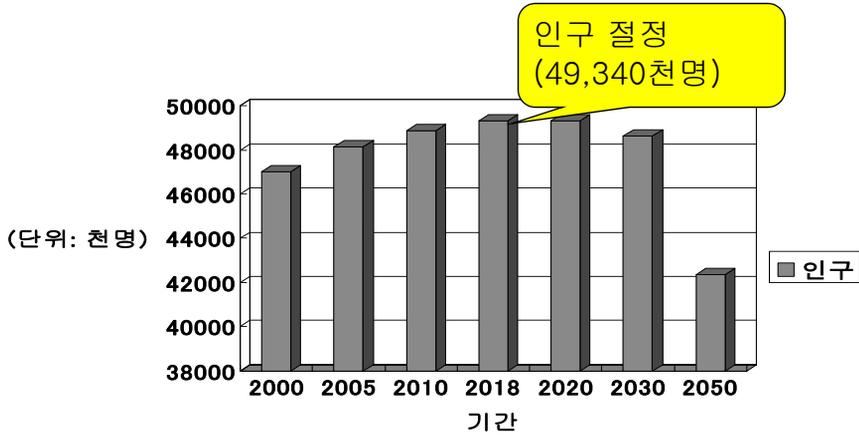
특허출원에 대해 외국어 출원을 인정한다.

외국어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이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출원된 출원 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이 출원 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한 번역문을 근거로 하면 된다고 생각됨.

### 《비고》

지난 번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측은 '장기 검토'라고 회답

## 미래의 한국의 인구 전망



##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

피할 수 없는 노동인구 감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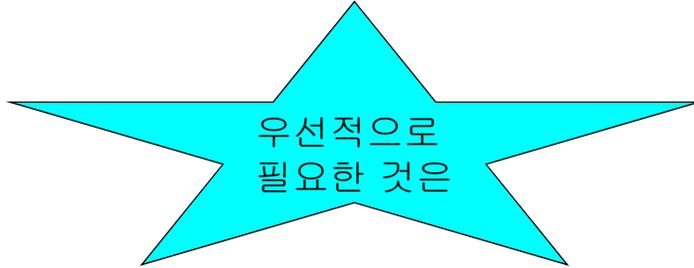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자를 활용 !!

자본축적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미래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통풍이 잘되고 투명성 높은  
투자환경 및 사회환경의 정비·구축 !!*

《참고자료》

<http://www.sjchp.co.kr/>  
(SEOUL JAPAN CLUB의 Web)

# 한국의 노동환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金在昫



# 한국의 노동환경



2008년 12월5일

金·張法律事務所  
(KIM & CHANG)

## 목 차

- I. 한국의 노사관계 개요
- II. 외국인 투자 기업 현황
- III. 현시점에서의 노사관계의 쟁점
- IV. 2008년 한국노사관계 주요 쟁점
- V. 한국 노동법의 특징
- VI. SJC의 건의사항
- VII. 한국 구조조정의 이해

KIM &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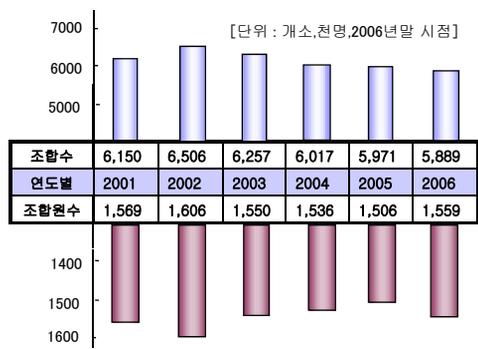
# I. 한국의 노사관계 개요

- 1 노동조합수 및 조직률
- 2 한국노동조합의 조직
- 3 사용자단체 현황
- 4 노사분규 현황
- 5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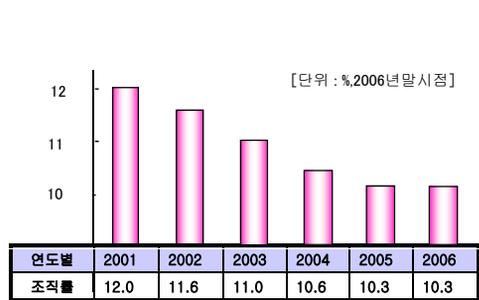
## 1. 노동조합수 및 조직률

- 2006년말 현재, 조합원 수는 1,559천명으로 그 조직률은 약10.3%에 해당한다.
- 조직률은 미국(12.0%), 영국(28.4%), 일본(18.2%)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 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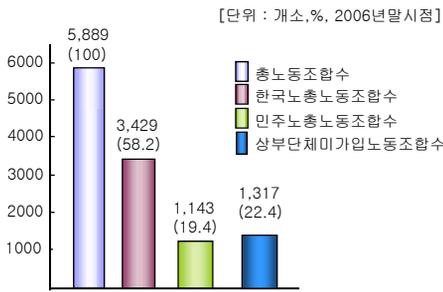


※ 한국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지부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산한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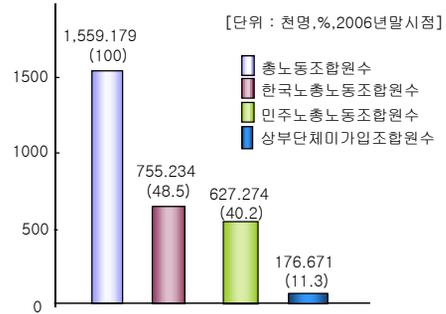
## 2. 한국노동조합의 조직

- 한국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총연맹이 두개존재하며, 각 기업별노동조합의 선택으로 상부단체를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1946년 결성된 한국최초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1995년까지는 유일한 합법적 상부단체이었다.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현대중공업노동조합등 일부 강성파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결성되었고, '법률외상부단체'로서 존재하다가 1995년에 합법화되었다.

[노동조합수 비교]



[노동조합원수 비교]



KIM & CHANG

## 3. 사용자단체 현황

- 한국에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로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있고 그의 경제단체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등이 있다.

[사용자(경제)단체 현황]

구분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협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설립연도	1970	1961	1884	1946	1962	2006
회원사	412	421	183	64,021	897	94

KIM & CHANG

## 4. 노사분규 현황

- 최근5년간 노사분규 추이를 보면,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모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단계로 전환되는 과도기 상황에 있음을 알수 있다.
- 더불어, 법과 원칙에 의한 해결관행의 확산으로 불법분규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단위 : 건, 명, 일]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생건수	322	320	462	287	138<253>	115<212>
근로손실 일수	93,859	137,241	184,969	117,912	131,359	93,385
불법분규 건수	66(20.5%)	29(9.1%)	58(12.6%)	17(5.9%)	24(17.4%)	17(14.8%)

주) 20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시 1건으로 계산함.

< >는 이전방식으로 계산했을 시의 숫자임.

KIM & CHANG

## 5.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08년노동연구원)

-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기업관과 고용안정을 가장 희망하고 있음.
- 근로자들의 요구내용은 과다하고, 행동방식도 과격하지만,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나타남.

**기업은 근로자보다 주주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근로자 요구 내용의 정당성**



**근로자 행동 양식**



**노동조합의 필요성**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KIM & CHANG

## Ⅱ.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2 외투기업 사업장 수
- 3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현황
- 4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특징
- 5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식 조사 결과

KIM & CHANG

###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특징은

- 투자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가 증가한데 비해, 세계시장의 M&A증가세에도 불구하고, M&A형 투자는 감소하였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4.9%증가함.
- 규모별로는 1억불 이상의 대형투자는 감소한 반면, 1억불 미만 투자는 13.2% 증가함.

[ 2007년 산업별 및 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불, 증감율%]

구분	2006년			2007년		
	M&A형	Greenfield형	계	M&A형	Greenfield형	계
제조업	1,269	2,977	4,246	609(Δ52.0)	2,078(Δ30.2)	2,688(Δ36.7)
서비스업	2,757	3,870	6,626	1,841(Δ33.2)	5,770(49.1)	7,612(14.9)
기타	284	84	368	30(Δ89.4)	180(115.4)	210(Δ42.8)
전체	4,310	6,930	11,240	2,481(Δ42.4)	8,029(15.9)	10,509(Δ6.5)

출처 : 산업자원부

KIM & CHANG

## 2. 외투기업 사업장 수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1997년 4,419개에서 2007년7월시점 13,076개로 증가함.

[ 연도별 외투기업 수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개)	11,515	12,909	14,765	15,434	14,806	13,304	13,076

출처 : KOTRA

주) 2005년7월에 그간 폐업한 사업장 약2,500개를 말소처리하였으므로, 실제 2006년도에 약1,000개 사업장이 증가하였음.

KIM & CHANG

## 3.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현황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매년 증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한국내 전체 노사분규 중 약8-14%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사업장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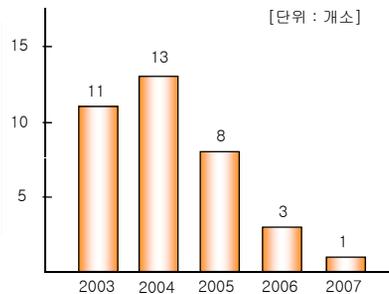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생건수	320	462	287	253	212
외투기업 수	32	34	27	36	29
비율(%)	10.0	7.4	9.4	14.2	13.6

주)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 지분율 50% 이상인 기업임.

[ 일본계기업의 노사분규 사업장 현황 ]

[단위 : 개소]



KIM & CHANG

## 4. 외투기업의 노사분규의 특징

###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 특징은

- 민주노총(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다수가 발생되고 있는 점.
- 한번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분규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 외국인 CEO 혹은 공장 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다수가 발생되는 점.

[ 연도별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사업장 상부단체별 현황 ]

[단위: 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외투기업 수	26	32	34	27	36	29
민주노총 소속	21	30	32	25	33	27
금속노조 소속	13	21	22	25	33	24

주)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 지분을 50% 이상인 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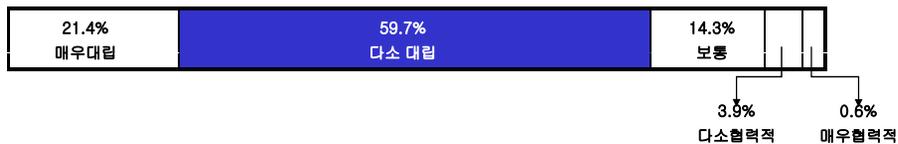
KIM & CHANG

## 5.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식 조사

### ■ 08년 전경련에서 실시한 외투기업인의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의식 조사결과

- 외국기업인은 한국의 현 노사관계에 대해 대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의 지급여력과 생산성을 벗어난 임금인상 등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
- 새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노사문제 '노동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과 '상생의 협력적인 노사문화구축'이 가장 많이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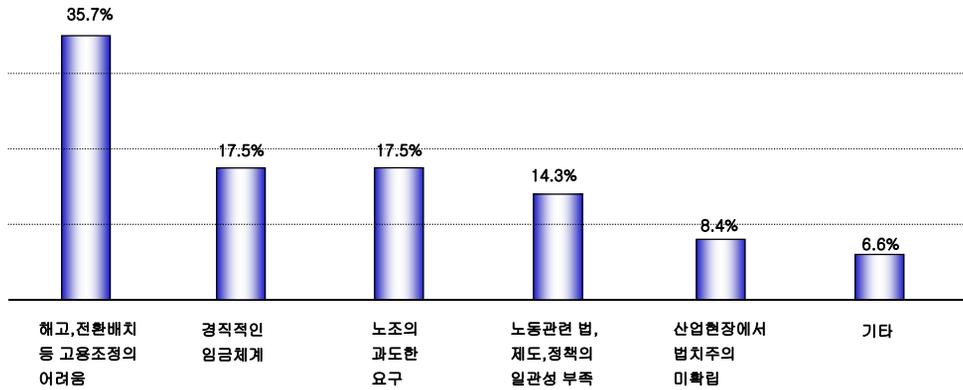
###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



KIM & CHANG

## 5.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식 조사(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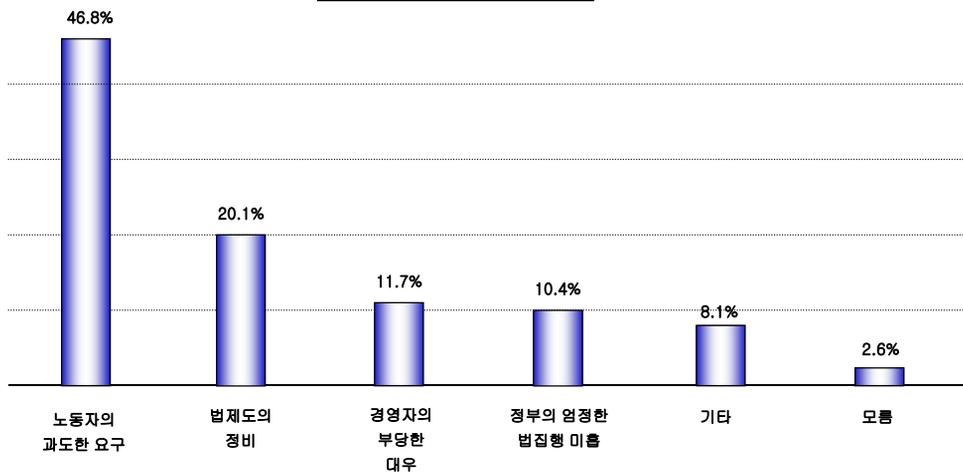
가장애로가 되는 노사문제



KIM & CHANG

## 5.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식 조사(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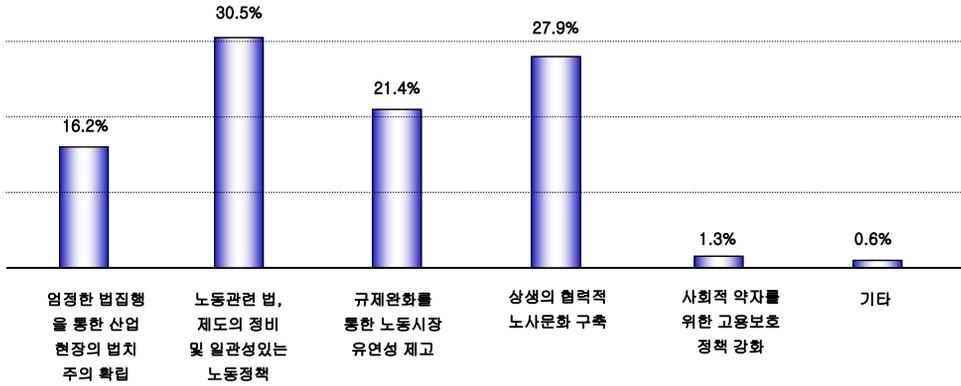
노사분규발생의 가장 큰 원인



KIM & CHANG

## 5.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식 조사(계속)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노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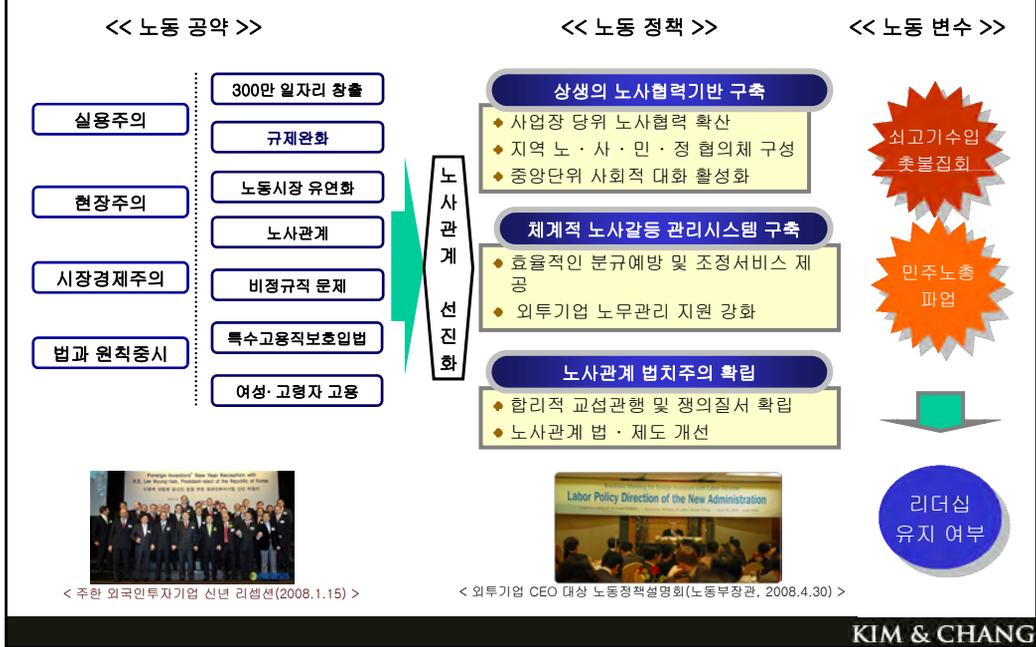
KIM & CHANG

### Ⅲ 현시점에서의 노사관계 쟁점

- 1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 2 노사관계 주요 쟁점 및 전망
- 3 노동법상의 쟁점 및 전망

KIM & CHANG

# 1.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 2. 노사관계 쟁점 및 전망

- 노사관계 쟁점
  - [구조조정]
    - IT, 자동차, 조선, 건설등 전산업 부문에 인원감축등 불가피
    - 노조의 저항이 약한 비정규직과 인건비 부담이 큰 고령자 중심의 인원감축이 예상됨.
  - [임금관련]
    - 노조에서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이 더 중요한 쟁점
- 노사관계 전망
  - 경기후퇴기에는 노동조합은 수세적 대응, 경기회복기에는 공세적 대응
  - 09년까지는 수세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08년도 노사분규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3. 노동법상의 쟁점 및 전망

- 핵심 쟁점

[비정규 근로자법]

- 정부 : 고용계약기간을 현행 최장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추진.
- 노동계 : 개정반대(기간연장보다는 비정규직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관련]

- 정부 :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하여 2010년부터 시행 방침.
- 노동계 : (민주노총) 전임자 급여는 노사자율에 맡기자, 복수노조 허용 (한국노총) 전임자 급여는 노사자율 또는 한차례 더 유예, 복수노조는 반대하지 않는다.

- 전망

- 노사간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음.
- 경제위기를 이유로 시행을 한차례 유예하거나, 법개정을 통해 다음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전망.

KIM & CHANG

### IV. 최근 한국노사관계 주요쟁점

- 1 비정규직 및 차별금지 관련 Issue
- 2 노사관계 Roadmap Issue
- 3 Turn Around
- 4 임금, 단체교섭
-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KIM & CHANG

# 1. 비정규직 및 차별금지

## [ 개정법률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촉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타임어</li> <li>아르바이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부 허가 받은 파견업종 근로자 (사서, 비서, 청소원, 경비 등)</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기간 최대 2년으로 제한</li> <li>2년 초과 사용시 무기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li> <li>단, 아래 예외사유가 있으면 2년초과 사용 가능</li> <li>1) 사업완료,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시</li> <li>2) 휴직, 파견 등 결원시</li> <li>3) 학업, 직업훈련 이수 필요시</li> <li>4) 고령자(55세 이상) 사용시</li> <li>5)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지식, 기술 활용시</li> <li>6)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 (1주 12시간)</li> <li>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li> <li>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 (위반시 과태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업무는 전문지식·기술, 경험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확대</li> <li>파견기간은 최장 2년 (현행유지) . 단, 55세 이상은 2년초과 가능</li> <li>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무가 발생</li> <li>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 발생: 고용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li> <li>근로자의 요구시, 파견대가 등 그 내역을 서면고지해야 함</li> </ul>
시행	2007.7.1. 이후 체결, 갱신 또는 연장되는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적용	2007.7.1부터 시행	2007.7.1.부터 시행. 단, 파견기간은 기종료되지 않은(파견기간 연장의 경우 포함)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

KIM & CHANG

# 1. 비정규직 및 차별금지 (계속)

## [ 차별금지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과 정규직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li> <li>법령상 "차별"의 명확한 기준은 없음. 추후 판례 등으로 정립될 예정</li> <li>- 규정에 의한 차별, 관행에 의한 차별 등</li> </ul>
차별시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조정·중재 등</li> <li>→ 차별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금전보상 등</li> <li>→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li> <li>*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이외에 법원에 제소도 가능</li> </ul>
입증책임	사용자가 차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인 이상, 공공부문: 2007.7.1부터 시행</li> <li>100인~299인: 2008.7.1부터 시행</li> <li>100인 미만: 2009.7.1부터 시행</li> </ul>

KIM & CHANG

## 2. 노사관계 Roadmap Issue

개정 전	사항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만 인정</li> <li>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 3천만원)</li> <li>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해서만 서면 명시</li> <li>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60일</li> <li>경영상 해고시 재고용 노력 의무</li> </ul>	<p>근로기준법 (2007.7.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u>금전 보상</u></li> <li><u>처벌조항 삭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구제명령 불이행시 <u>이행강제금 부과</u>(1회 2천만원 이내, 연2회, 총 4회 범위)</li> <li>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u>처벌</u>(1년, 1천만원 이하)</li> </ul> </li> <li>서면명시 사항에 <u>근로시간, 휴일, 휴가 추가</u> 및 근로자 요구시 <u>교부의무 부과</u></li> <li><u>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u></li> <li>경영상 해고시 <u>사전통보기간 50일로 단축</u></li> <li>경영상 해고시 <u>재고용 의무 부과</u></li> </ul>

KIM & CHANG

## 2. 노사관계 Roadmap Issue (계속)

개정 전	사항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12.31까지 유예</li> </ul>	<p>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2010.1.1.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12.31.까지 유예(3년 추가 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공익사업 파업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li> </ul>	<p>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2008.1.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공익사업에 <u>직권중재제도를 폐지</u>하는 대신, <u>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u>(파업참가자의 50%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li> </ul>	<p>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2007.1.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20% 감액 적용(다만, '07에는 30% 감액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미만의 자녀에 대해 1년간 적용</li> </ul>	<p>육아휴직 (200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8.1.1 출생한 자녀부터 3년미만까지 허용</li> <li>08.6.22부터 1년범위에서 1회에 한 하여 분할사용가능</li> </ul>

KIM & CHANG

## 2. 노사관계 Roadmap Issue (계속)

개정전	사항	개정후
없음	고객에 의한 성희롱방지 (20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고객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있는 자가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li> </ul>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0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정구시, 3일의 휴가를 부여</li> <li>•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li> </ul>
없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20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15시간이상 30시간이내의 범위에서 근무가능</li> <li>• 허용하지않은경우, 서면으로사유통지</li> </ul>

KIM & CHANG

## 3. Turn-Around

- ERP (Early Retirement Program)
- ISP (Involuntary Separation Program)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해고 회피 노력
  - 공정기준 대상 선발
  - 성실 협의
-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 Outplacement

KIM & CHANG

## 4. 임금, 단체교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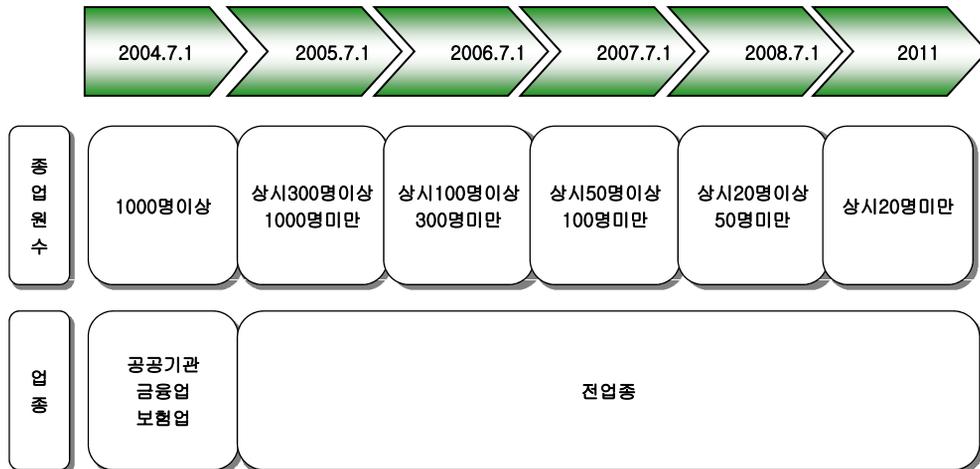
### [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안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0.7%	정규직(9.4%) 비정규직(19.9%)	정규직(9.6%) 비정규직(19.2%)	정규직(9.3%) 비정규직(18.2%)	정규직(9.1%) 비정규직(18.1%)
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5%	정규직(9.3%±2%) 비정규직(15.6%)	정규직(9.1%) 비정규직(17.4%)	정규직(9.0%) 비정규직(19.5%)	정규직(8.0%) 비정규직(20.2%)
한국경영자총협회	대기업동결, 3.8%	대기업동결, 3.9%	대기업동결, 2.6%	대기업동결, 2.4%	대기업동결, 2.6%
협약임금인상률	5.2%	4.7%	4.8%	4.8%	-

KIM & CHANG

## 5. 주40시간제 적용확대

### [ 적용시기 ]



KIM & CHANG

## 5. 주40시간제 적용확대(계속)

### [ 법개정 주요내용 ]

구분	현행법	개정법
법정근로시간 단축	주간근로시간 : 44시간	주간근로시간 :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 단위기간 : 1개월이내 - 특정주의 근로시간 : 56시간	- 단위기간 : 3개월이내 - 특정주의 근로시간 : 52시간
월차유급휴가	월개근시 : 1일	폐지
연차유급휴가	- 연간개근시 : 10일 - 1년근속시 : 매년1일 가산 - 상한 : 무제한(20일초과일수는보상)	- 연간8월이상 출근시 : 15일 - 2년마다 1일가산 - 상한 : 25일 - 1년미만근속자 : 월1일(1년후15일에서공제)
생리휴가	유급생리휴가 : 월1일	무급생리휴가 : 월1일
휴가사용 촉진방안	없음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미사용시, 보상의무를 면제
연장근로수당의 할증률	- 1 주간의 연장근로제한 : 주12시간 - 할증률 : 50%	- 1 주간의 연장근로제한 : 주16시간 확대(3년간) - 할증률 : 50%(최초4시간에 대해 25%, 단 3년간)
임금보전	없음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저하를 방지

KIM & CHANG

## V. 한국노동법의 개요

① 노사관계에 중요한 법령

② 한국노동법의 특징

KIM & CHANG

## 1. 노사관계에 중요한 법령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을 최저수준을 정한 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결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정한 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의 사용기한 및 차별금지에 관하여 정한 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관하여 정한 법률

KIM & CHANG

## 2. 한국노동법의 특징

해고 및 정리해고의 제한	-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 - 해고회피 노력
퇴직금제도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제도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
대체근로금지	쟁의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금지
비정규직 차별금지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사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금지

KIM & CHANG

## VI. SJC의 건의사항

### 1 SJC 건의사항

KIM & CHANG

## 1. SJC의 건의사항

###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의무 철폐

#### 현행 법적 요건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요건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건의 사항

- “동의”를 삭제하고, 경영상의 필요성, 합리성에 따라 불이익변경 가능하도록 하자.
- 불이익변경 타당성에 대해,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

KIM & CHANG

## 1. SJC의 건의사항

### 2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 금지

#### 현행 법적 요건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동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요건 :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8월이상 출근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년이 되는 3개월전 미사용휴가일수 통지 → 10일내 휴가사용계획서를 사용자에게 제출 → 미제출시, 1년이 되는 2개월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시기 지정통보)

#### 건의 사항

- 유급휴가를 일종의 임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그 취지에 반한다.
-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을 법령으로 금지하도록 하자.

KIM & CHANG

## 1. SJC의 건의사항

###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 현행 법적 요건

- 관계법령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 요건 :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임.)

#### 건의 사항

- 퇴직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대화를 통해 기업별 경영상황에 맞게 적절한 퇴직금제도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
-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금의 격차를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자.
- 퇴직금산정기초액을 고용기간을 통산한 평균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

KIM & CHANG

## 1. SJC의 건의사항

### 4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제한 및 차별금지 완화

#### 현행 법적 요건

- 관계법령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9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동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요건 : -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의 사항

- 사용기간제한의 연장(최장 2년 → 4년) 및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해야 한다.
-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설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KIM & CHANG

## 1. SJC의 건의사항

### 5 노동조합에의 재정지원(전임자 급여지원 포함)의 금지

#### 현행 법적 요건

- 관계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동법 제24조제2항(노동조합의 전임자)
- 요건 : 복수노동조합 허용 및 전임자 급여 사용자 지급금지규정은 2009년말까지 유보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 제24조제2항의 규정은 2009.12.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의 및 확인 사항

-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제소가 없인 적발되기 힘들다. 기타 적발수단을 법률상 담보할 예정은 없는가?
- 2010년부터 일시에 운용개시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의 유예기간을 고려하고 있는가?
- "NO Work No Pay"의 원칙적용으로 분쟁기간중의 급여지급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가?
- 명목상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형태취하면서 실제로 노동조합업무만 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KIM & CHANG

## VII. 한국 구조조정 의 이해

- 1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
- 2 최근 사례에서 본 구조조정의 빛과 그림자
- 3 한국에서의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 4 최근 사례 연구

KIM & CHANG

## 1.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

###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발생

판단기준은, 일시적인 경영악화와 사업부문/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회사의 현장 및 사업의 일시적 축소로 인한 경영상 이유는 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2. 해고회피 노력

→ 최선을 다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된 경우]

- ①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임금)감축 등 인건비 절감
- ② 신규채용 중지
- ③ 임시직의 재계약 금지
- ④ 배치전환, 사외파견, 전직훈련,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 ⑤ 일시 휴업(휴직)
- ⑥ 희망퇴직 모집
- ⑦ 사무실 규모축소, 임원의 임금 동결 등

KIM & CHANG

# 1.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

## 3.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원선정기준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 생활 보호 측면]

- ① 근로자의 연령
- ② 근속연한
- ③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 ④ 재산소유 상태
- ⑤ 다른 가족의 소득정도
- ⑥ 근로자의 건강상태

### [기업 이익 측면]

- ① 평소 근무실적
- ② 기능 숙련도
- ③ 근로능력, 경험, 자격
- ④ 전직 가능성
- ⑤ 기업에의 불이익 유무

# 1.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

##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협의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노동조합에게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등을 통보해야 함.

### [협의 대상]

- |                                   |                  |
|-----------------------------------|------------------|
| ① 경영상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 ② 기업의 경영상황       |
| ③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                     | ④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
| ⑤ 해고의 사유 또는 그 필요성                 | ⑥ 해고 예정 인원       |
| ⑦ 해고 후, 2년 이내 해고자의 우선재고용의무에 대한 사항 | ⑧ 이직, 퇴직, 해고의 조건 |
| ⑧ 해고의 일정                          |                  |

## 1.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

### 5. 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해고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고 계획을 신고해야 할 대상]

- ① 상시 근로자수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 ②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 : 10% 이상
- ③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 6. 경영상 해고 실시

- > 30일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
- > 연차미사용 수당 정산 지급
- > 법정퇴직금 지급

KIM & CHANG

## 2. 최근 사례에서 본 구조조정의 빛과 그림자

### 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

- 인사적체 및 승진 기회 확대
- 조직분위기 쇄신(긴장감 부여, 성과주의)
- 인건비 부담 경감 노력의 일환
- 무능인력의 방출
- 경영 합리화 추진

### 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

- 우수인재, 지식자산, 노하우의 유출
- 퇴직위로금, 소송 등 추가 비용 증가
- 조직신뢰 저하
- 기업이미지 하락

[구조조정 후 발생하는 후유증]

- ① 노사간 신뢰 상실
- ② 조직구성원 충성심 저하
- ③ 퇴직자와의 갈등
- ④ 추가적인 고용조정 필요

KIM & CHANG

### 3. 한국에서의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부당해고 및 해고무효소송	-회사의 강압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본인의 자필로 희망퇴직서 작성 필요
남녀차별 금지	-여자라는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자라는 이유로 퇴직위로금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법정소송	희망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자, 회사간의 모든 권리를 각성 등에 명시하여 향후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

KIM & CHANG

### 3. 한국에서의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법정퇴직금 전액지급	-법정퇴직금 지급시, 대출금 등을 사전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안됨. -법정퇴직금은 전액 당사자에게 일단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공제
퇴직소득 처리조치	희망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처리를 위해서는, 희망퇴직위로금규정 또는 희망퇴직실시에 대한 노사합의서가 필요함.
노동조합 대응	-노조는 희망퇴직을 정리해고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점. -기업의 경영실패는 근로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노력보다는 과거의 환경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기보호적 입장이 매우 강하다는 점.

KIM & CHANG

#### 4. 최근 사례연구(S사 사례)

전체 Process

##### 본 발표에서 다룰 사례

'06년

1단계 - 명예퇴직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

'07년 초

2단계 - 노사합의를 통해 비용 구조조정  
(인건비 20%감축 및 성과급제 시행)

'07년 중

Turn-around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채권단에 의한 Global 구조조정 결정 - 한국 공장 폐쇄 결정

'08년

무분규 Closure 실행

KIM & CHANG

#### 회사개요

##### ● 회사 개요

- 일본 대기업의 해외 생산거점 계열사 중 1곳
- 35년 이상 한국에서 경영
- 총 종업원수: 520여명 (정규직 460명 + 계약직 60명, 2006년 현재)
- 경영상황 악화로 총5~6회의 구조조정 단행
- 2005년 실적: 자본금 132억원/매출 약 1,700억/영업손실 약 110억원

##### ● 노동조합 개요

- 상급단체: 외국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

KIM & CHANG

경영상황의 악화 및 라인 철수

내용	분석 결과
◆ 실적악화	→ 자본잠식상태(42%)
	→ 과도한 영업손실의 발생
	→ 사업부문 이관의 필요성
	→ 산업평균 및 동일기능수행기업에도 비교열위
◆ 모회사의 사업위기	→ 사업부문의 자본잠식
	→ 과도한 영업손실의 발생
◆ 라인의 해외 이관	→ 타 생산거점과 비교하면 생산하는 것은 비경제적
	→ 잉여인력발생

- 06.6. 최초 문의
- 06.6. Roadmap & Strategy 논의 후 추진하기로 계약
- 06.9~12. 현장 camp 가동 및 TF 운영
- 06.10. 사업구조조정 발표(일부 라인 폐쇄)
- 06.11. 라인폐쇄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50% ERP 추진)
- 06.12. 임금 20%삭감 및 성과급 도입 노사합의
- 07.1~ . 인사제도 선진화 프로젝트 수행
- 07.4~08.3. 개선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자문컨설팅 수행

**초기 영역별 목표**

**결과 평가**



- ✓ Risk**

  - 기술력이 좋고 이익이 나는 라인을 폐쇄시키고 기술력 낮은 라인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인력구조조정 실행
  - 동일 공단 지역내의 관행 – ERP package 등이 매우 높은 수준( Max 60개월-통상임금 기준)
  - 임금삭감(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노조의 동의없이 시행이 불가능함
- ✓ 성공 요인**

  - '기업의 희생'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성과급 도입-임금삭감이라는 Deal-card 개발
  - 전문가 집단의 종합적인 대응이 관건
  - 사전 준비 철저 ;전략적 Roadmap 설계 및 대응방안
  - 회사 내부 인력의 역할수행 및 역량 극대화
  - 자체 TF와 자문팀의 효과적 communication
  - CEO Leadership 의 회복과 진두 지휘
- ✓ Lesson**

  - 사업구조조정 이후 인력구조조정만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후의 기업 회생을 위한 임금삭감 및 인사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활용방안 등 복합적인 서비스로 접근
  - 임금삭감과 성과급을 barter하여 노조의 찬반투표 가결

#### 4. 최근 사례연구(R사 사례)

노동조합 설립배경

- 한국현지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수익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일본본사 및 한국현지법인의 경영진 사이에서 축소사업부문 인력의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는 구조조정 방침 결정
- 2007.10월 영업부서 구조조정에 관한 일본 본사와의 FAX내용이 직원들에 게 유출 됨
- 한국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해부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통제를 소홀히 하여 노조가 설립되었음.

KIM & CHANG

노동조합의 설립

- 2007.11월 노조설립
  - 산별조직에 가입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R코리아지부
  - 조합원 : 전체직원 25명중 15명 가입

KIM & CHANG

■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 기초협약 : 유일교섭단체인정, 사무실및 시설편의제공 등
- 단체교섭운영규정 : 교섭절차, 교섭기간중 교섭위원에 대한 유급 인정 등
- 고용안정협약 : 정리해고, 배치전환, 외부인원 채용 시 조합과의 합의 등 요
- 본협약 (총 126개 조항) : 임금, 복리후생 등 다양한 항목

■ 교섭진행

- 2007년12월4일~2008년 1월21일 총 9차 교섭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2008.1.21 노동위원회에서 최종합의 조정종결
- 그 이후 몇 차례 잔여 항목에 대한 교섭진행

■ 교섭 시 노동조합의 회사 공격 사례

- 본사노조와의 연대투쟁, 쟁의선언  
고용안정협약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쟁의돌입, 일본으로 가서 본사 대표자와의 직접 교섭, 본사 노조와의 연대투쟁 선언
- 사장의 교섭 직접참가요구, 대리인 참가 거부
- 부당노동행위 고소협박  
인사부서 직원의 조합가입자격에 관한 노동부 회시설명 문제와  
상급단체 임원의 회사 무단출입저지 이유로
- IT 감사저지 시도  
회사 이메일 정보 누출조사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감사 저지 시도
- 노동조합 소식지(국영문) 전세계 지사에 송부, 자신들의 정당성 설명

■ 노사간 주요 쟁점 및 조정 합의내용

• 노동조합의 자격과 가입

노조안 : 회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회사안 : 자유가입

합의안 : 자유의사에 의하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가입금지

•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노조안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모든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하자

회사안 : 회사의 사전승인을 요함

합의안 : 회사의 사전승인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 조합에서 사전통보 한 총회 및 집행부회의 시
- 상급단체 교육 및 회의 등 모든 노동조합활동
- 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조합원의 근무시간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 시설편의 제공

노조안 : 조합전용사무실, 컴퓨터, 전화, 비품, 차량 등 무상제공

회사안 : 최소한의 사무공간 제공

합의안 : 노조사무실(혹은 사무공간) 집기, 기타 필요한 비품, 차량제공.  
단, 차량을 노사가 사전협의하여 사용한다.

• 희망퇴직 시행

노조안 : 전 조합원에게 시행

회사안 : 폐쇄예정 영업부 직원에게만 시행

합의안 : 희망조합원 전원에게 시행

최대:(기본급+직책수당) X (30개월)

• 고용안정협약, 본협약 등 기타 미해결 제반사항

합의안 : 기타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 희망퇴직 전직원(조합원 포함)에 시행

조합원 15명, 비조합원 4명 퇴사

- 무 조합원 노조로 전략 (회사 잔류 1명도 노동조합 탈퇴신청 함)

- 영업부 폐쇄

- 회사 정보 관리의 철저

본지사간 교신내용, 관리자 이메일

- 부서장의 리더쉽 제고

회사를 위해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 양성

- 직원간, 상하간 의사소통의 활성화

-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육강화

## (부록) 금융위기이후 노사관계 쟁점

1 노사관계 주요 쟁점 및 전망

2 노동법상의 쟁점 및 전망

KIM & CHANG

### 1. 노사관계 쟁점 및 전망

#### ■ 노사관계 쟁점

##### [구조조정]

- IT,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산업 부문에 인원감축 등 불가피
- 노조의 저항이 약한 비정규직과 인건비 부담이 큰 고령자 중심의 인원감축이 예상된다.

##### [임금관련]

- 노조에서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이 더 중요한 쟁점

#### ■ 노사관계 전망

- 경기후퇴기에는 노동조합은 수세적 대응, 경기회복기에는 공세적 대응
- 09년까지는 수세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08년도 노사분규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KIM & CHANG

## 2. 노동법상의 쟁점 및 전망

### ■ 핵심 쟁점

#### [비정규 근로자법]

- 정부 : 고용계약기간을 현행 최장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추진.
- 노동계 : 개정반대(기간연장보다는 비정규직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

####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관련]

- 정부 :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하여 2010년부터 시행 방침.
- 노동계 : (민주노총) 전임자 급여는 노사자율에 맡기자, 복수노조 허용  
(한국노총) 전임자 급여는 노사자율 또는 한차례 더 유예,  
복수노조는 반대하지 않는다.

### ■ 전망

- 노사간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음.
- 경제위기를 이유로 시행을 한차례 유예하거나, 법개정을 통해 다음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전망.

KIM & CHANG



<Session II-2> : 【한국측 투자전문위원회 활동 보고】

## 대일 무역 · 투자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오 태 현



#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2008년 12월 5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오탈현

## 목차

1. 대일투자 현황
2.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3.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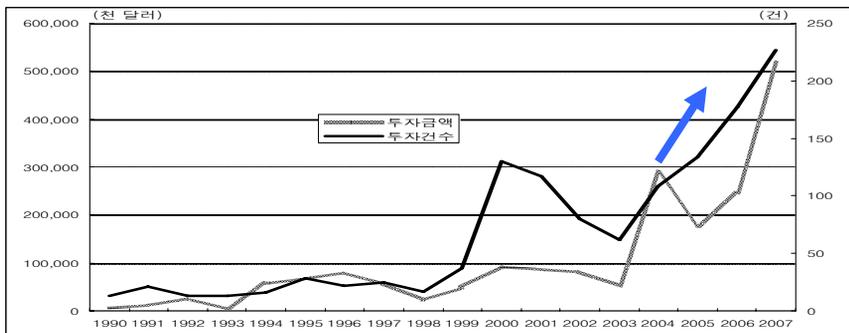
## 1. 대일투자 현황

- 최근 증가하는 대일투자
- 대일투자의 연도별 업종별 추이
- 대일투자 업종별 내역 분석
- 아시아 주요국가의 대일투자
- 아시아 국가별 특징
- 아시아 기업의 대일투자 목적 및 수단

### 최근 증가하는 대일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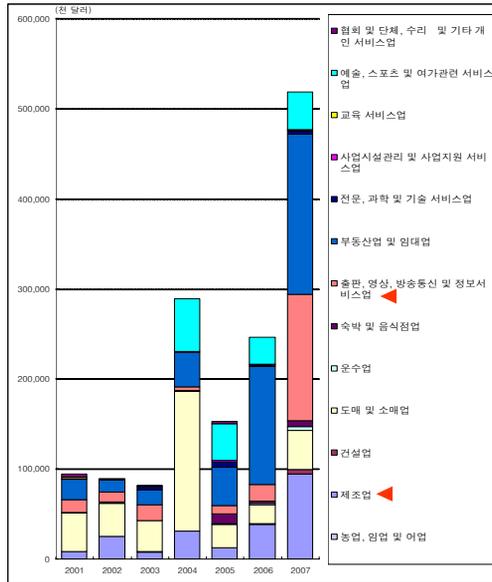
#### ■ 한국, 대일투자 2003년 이후 증가 추세

- ◆ 신고건수 및 금액, 투자건수 및 금액 모두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
- ◆ 주로 IT관련(콘텐츠, 게임 등)투자가 두드러지며 식음료 분야도 상승세
- ◆ 제조업 관련하여 제품의 경쟁력 상승으로 기존에 현지 대리점을 통해 수출하던 국내 중견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 ◆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의 투자양상은 판이하게 다름. 또한 2003년경까지는 건당 투자금액이 비교적 적었던 반면 그 이후는 건당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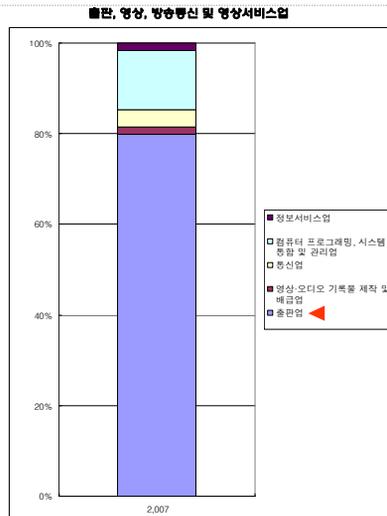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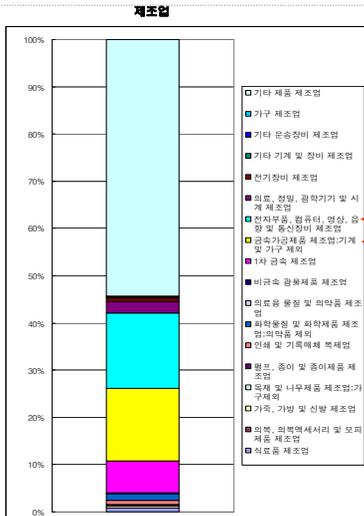
## 대입 투자의 연도별 업종별 추이

- 2007년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건수, 금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함
- 부동산 및 임대업 투자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부동산 및 임대 투자가 늘고 있음
- 한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가 2007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 전년대비 약6.6배, 건수로는 약7.3배 늘어났음
- 그 동안 저조했던 제조업 투자가 늘고 있고 방송 및 정보서비스 관련 투자가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게임분야와 문화콘텐츠 분야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대입 투자 업종별 내역 분석

-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속가공품 제조업도 크게 증가함
- 2007년 큰 성장세를 기록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영상서비스업 중에서는 특히 출판업 관련 투자가 많이 늘어났음



## 아시아 주요 국가의 대일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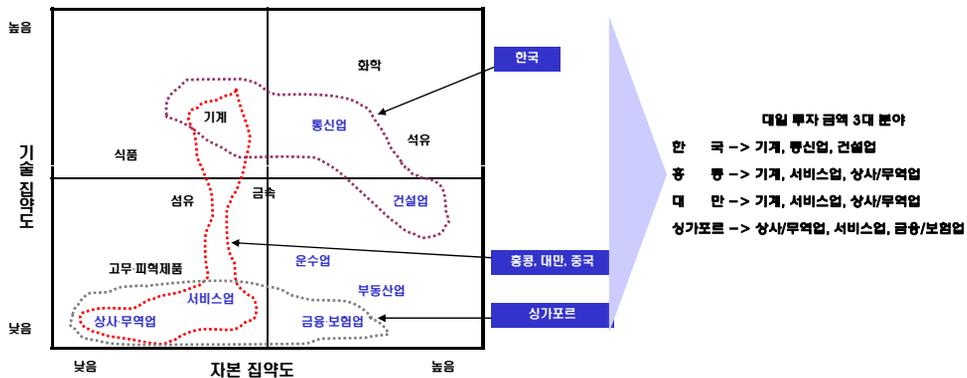
- 아시아 국가들의 대일투자는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투자가 많음
- 특히 싱가포르의 공기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상대적으로 홍콩과 대만이 제조업투자가 많으며 기계 분야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88	5,278	1,537	1,528	1,003	1,095	605	1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제조업</b>	17.2	18.1	31.7	42.5	17.3	36.2	5.8	11.2
식품	1.5	9.5	1.4	0.2	1.9	0.1	0.2	10.1
섬유	0.1	0.0	0.5	1.3	1.9	2.3	1.8	1.6
고무/피혁	0.9	3.0	0.3	0.1	0.1	0.0	..	..
화학	1.5	0.7	2.5	0.3	1.4	0.6	1.2	0.1
금속	0.7	0.0	3.5	0.1	1.0	0.0	1.0	0.3
기계	7.0	4.3	16.5	40.1	7.5	33.0	1.5	7.8
석유	0.6	0.6	0.4	0.0	0.1	0.0	0.8	1.2
기타	4.9	0.0	6.6	0.5	3.5	0.2	0.3	0.1
<b>비제조업</b>	82.8	81.9	68.3	57.5	82.7	63.8	94.2	88.8
통신업	1.7	0.9	0.5	1.3	..	..	0.5	0.3
건설업	2.6	0.1	5.7	0.2	2.0	0.0	5.1	6.6
상사무역	29.7	23.9	36.9	24.2	59.2	23.5	57.5	44.6
금융보험	12.4	31.3	2.6	3.5	0.6	0.3	0.2	0.0
서비스	25.1	22.5	17.1	21.1	14.9	29.9	26.1	31.6
운수업	4.1	2.2	1.5	0.4	0.4	0.0	2.5	4.6
부동산업	6.1	1.0	2.5	5.5	5.3	10.1	1.2	0.7
기타	1.2	0.1	1.5	1.2	0.3	0.0	1.2	0.4

.. 1989~2004년 집계, 단위: 건, 억엔, %

## 아시아 국가별 특징

- 싱가포르는 주로 공기업을 통한 금융관련 투자가 대부분임. 특히 기업매수와 주식매수 또는 부동산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홍콩은 최근 부동산개발과 Capital Gain 분야 투자가 늘고 있으며 종합상사(특히 식품, 섬유), 물류(해운 등), 통신 관련 기업이 대일투자에 적극적임
- 대만은 성숙기술을 활용한 낮은 비용의 대량생산을 하는 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출자, 매수 또는 연구개발 목적 투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음
- 중국기업은 판매확대, 판로확보, 기술획득을 위한 대일투자를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매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아시아 기업의 대일 투자 목적 및 수단

- 대규모 투자회사 등 대기업은 기업매수를 통해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여 기업 재평가로 인한 수익, 즉 Capital Gain 획득이 대일투자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음
- 제조업은 일본의 시장과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관련 서비스(통신, 물류 등)은 사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생활관련 서비스는 독창적인 상품과 아이디어로 점포를 확장시키는 것이 대일투자의 목적임

	투자·부동산회사	제조업	비즈니스관련 서비스	생활관련 서비스
<b>투자목적</b>				
시장진입 판매확대 ◀		○	○	○
기술획득		○		
소재·부품 조달		○		
Capital Gain ◀	○		○	
정보수집	○	○	○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	○	○
비즈니스모델 습득 및 응용	○	○	○	○
자산(리스크)분산	○	○	○	
글로벌 네트워크		○	○	
<b>투자수단</b>				
기업매수(M&A) ◀	○	○	○	
대형개발사업참여	○		○	
대표사무소 설치	○	○	○	○
현지법인 설립	○	○	○	○
연구개발센터 설립		○		
서비스 거점 확보		○	○	○
출점			○	○

## 2.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대일투자 단계별 촉진 정책
- 단계별 과제 및 향후 계획
- 규제완화 정책

∴ 규제완화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표시

## 대일투자 단계별 촉진 정책

- 2001년부터 단계별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일본정부는 “대일직접투자는 새로운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유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기존기술과 노하우 등에도 영향을 주어 새로운 전개를 촉진하는 것이며, 일본경제를 자극, 활성화하여 고용기회 증대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

1단계 대일투자 **속진** 프로그램(2003년 3월 대일투자회의)



2단계 대일투자 **가속** 프로그램 (2006년 6월 대일투자회의)



3단계 대일투자 **가속개정(확대)** 프로그램 (2008년 1월 대일투자유식자회의)

## 단계별 과제 및 향후 계획

- 1단계
- 2001년 대일투자 유치 방침을 수립하고 당시 6.6조 엔이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을 5년 후 2배로 늘린다는 목표 설정(2006년 말 현재 12.8조 기록)
  - 2003년 3월 ‘대일 투자회의(수상 의장)’를 설치하고 투자정보 제공, 사업환경 정비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대일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함

- 2단계
- 1단계 중료를 1년 앞당겨 2단계로 진입
  - 목표를 2006년 말 대일투자/GDP 비율을 2.5%에서 2010년에 5%정도로 배증

- 3단계
- 2007년 12월에 대일투자회의를 폐지하고 2008년 1월에 대일투자유식자회의 발족
  - ‘대일투자유식자회의’를 통해 향후 대일투자 확대에 필요한 5대 과제를 선정

### 대일투자 확대를 위한 5대 과제

- 원활한 M&A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 외자유지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
- 분야별 중점전략 책정
- 비즈니스비용 삭감과 제도의 투명성 향상
- 외자유지에 따른 지역활성화와 외자환영 분위기 강화 등

**참고:**

**대일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중점 분야별 과제**

분야	과제
투자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대일투자 환경 기본방침을 적극 발신</li> <li>대일 투자가 일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해를 적극 추진</li> </ul>
사업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매수가 용이하도록 국내 제도 개선</li> <li>신규사업 시작이 용이하게 개선</li> <li>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 외국기업 능력 활용을 가능하게 정비</li> <li>대일투자를 지원하는 법률 등의 서비스 수혜의 간편화</li> </ul>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시 필요 행정정보 일원화, 절차의 명확, 간소, 신속화</li> <li>투자가에 필요한 법령 등의 해석을 명확화하는 No Action Letter제도(*)의 활용을 확대</li> </ul>
고용·생활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직종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혁추진과 함께 공적 연금제도의 이종가입 등의 방지 필요</li> <li>입국, 체류 관련 제도 개선</li> <li>국제학교 관련제도 정비, 비즈니스 능력 즉시 활용 가능 일본인 육성 노력 및 외국인 유학생 수용환경 정비 도모</li> <li>외국인 의사 수용을 확충</li> </ul>
중앙·지방정부 지원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li> <li>구조개혁 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li> <li>대일투자촉진에 관한 중앙정부의 체제를 정비</li> </ul>

\* 행정적용 사전확인 절차로서 민간기업 등이 자기 사업 활동 관련 구체적 영위에 관해 그 영위가 법령규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담당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그 기관의 회답과 동시에 관련외담내용을 공표하는 절차

**규제완화 정책**

- 1990년대 중반 이후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각 부문별로 1,000건 이상의 규제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외국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수익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비제조업의 효율화 및 생산성 강화가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비제조업 관련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M&A관련 규제완화로 M&A방식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일본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상황**

계획기간	계획명	규제완화 검토 대상 건수
1995~1997	규제완화추진계획	2,823
1998~2000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	1,268
2001~2003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	1,153
2004~2006	규제완화·민간개발추진 3개년 계획	1,349

**일본의 규제완화지표 추이**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제조업	0.772	0.772	0.772	0.775	0.775	0.785	0.785
건설업	0.667	0.667	0.667	0.750	0.750	0.750	0.750
전기가스수도	0.446	0.446	0.446	0.446	0.494	0.611	0.611
소매업	0.243	0.324	0.324	0.389	0.487	0.525	0.525
금융보험업	0.379	0.399	0.466	0.521	0.595	0.704	0.704
통신업	0.400	0.400	0.500	0.667	0.700	0.769	0.786

∴ 규제완화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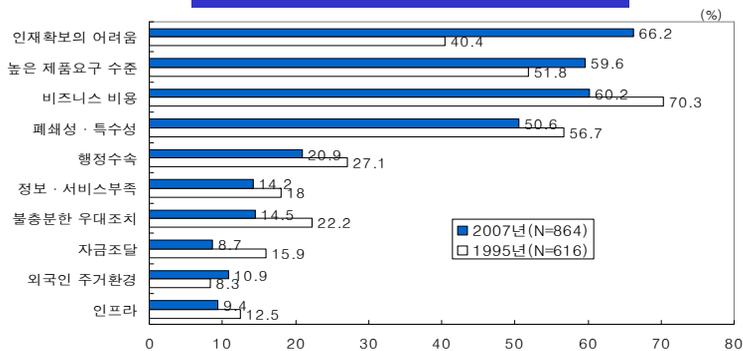
### 3. 대일 무역 · 투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일본 현지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 한국기업 조사를 통해 나타난 애로사항
- 주요 애로사항과 일본의 투자유인 정책
- 애로사항 우선 해결 분야
- 일본의 비관세장벽 중 조치완료 안건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 철강산업
  - ◆ 건설산업
  - ◆ 자동차 산업
  - ◆ 통신산업
  - ◆ 가전산업
  - ◆ 금융산업

### 일본 현지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 인재 확보와 제품요구 수준이 높은 점은 여전히 일본에서의 사업활동에 장애로 남아 있으며, 최근 오히려 그 경향은 강해지고 있음
- 반면 일본시장의 폐쇄성 특수성과 제반 비즈니스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음
- 또한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계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분야도 크게 호전되었다고 외국기업들은 보고 있으며 일본국내에서의 자금조달도 수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 (복수답변)



∴ JETRO 대일직접투자에 관한 외자계기업의 의식조사 (2008년3월)

## 한국기업 조사를 통해 나타난 애로사항(대일 무역 투자 기업 인터뷰 결과)

- 지적인 애로사항은 크게 비용적 측면과 제도·관행상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인적, 물적, 재무, 정보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제반 비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제도·관행상의 측면에서는 폐쇄적인 거래거리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음
- 한편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본에 진출한 제조업 기업들은 품질에 대해 까다로운 일본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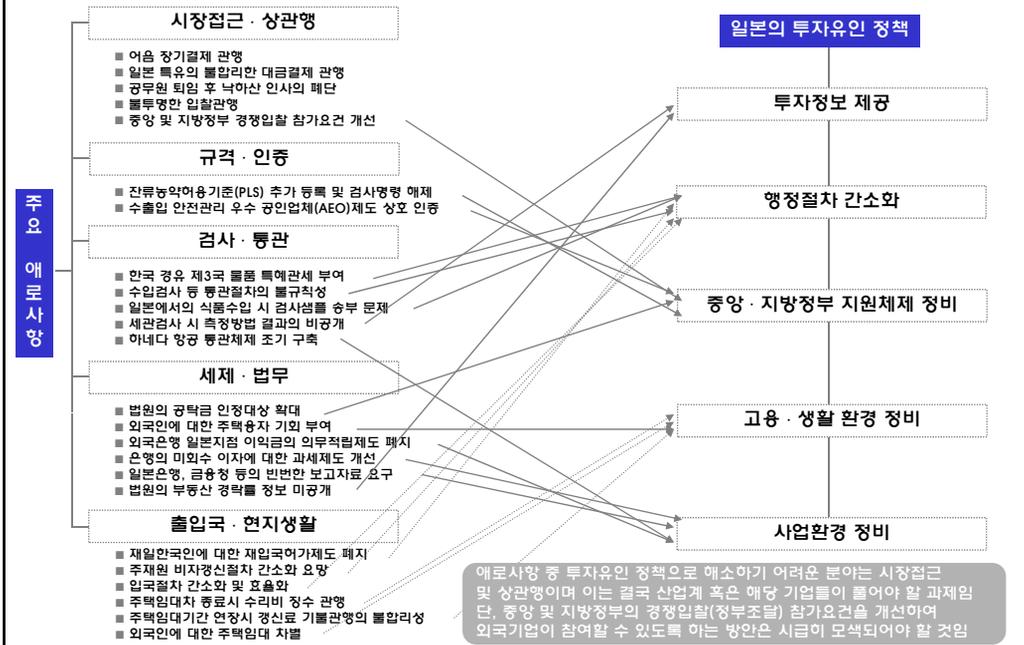
### 주요 애로사항

	비용 요인	제도·관행상의 요인
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인건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고용·외국자본에의 반감 등으로 인한)인재확보의 어려움</li> </ul>
물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전입 비용이 높음</li> <li>■ 부동산 관련 비용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한 폐쇄적 계열거래</li> <li>■ 엄격한 품질요구 수준</li> </ul>
재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주가</li> <li>■ 많은 세금</li> <li>■ 높은 차입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상호보유·법인세계 등을 통한 메인뱅크 시스템</li> </ul>
정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정보수집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제도·법률·규제</li> <li>■ 불투명한 절차·운영</li> <li>■ 전문가 부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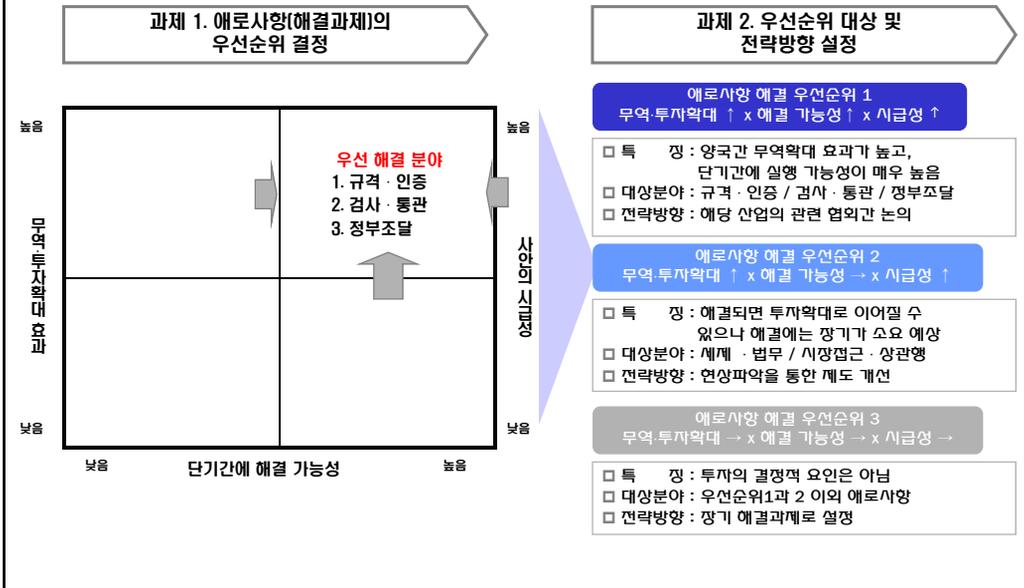
· 국내에서 인터뷰한 기업: 범우화학(2008/07/18), 아모레퍼시픽(2008/07/28), 제너시스젠즈(2008/08/14), 한화92008/08/27), 흥신(2008/09/02), 동일방직(2008/09/02), 살트론(2008/09/03), POSCO(2008/09/09), 대한제당(2008/08/08서면인터뷰)  
 · 일본 현지에서 인터뷰한 기업: CJ제편(2008년/10/30), 韓國廣城(2008년/0/30), 현대모비스(2008/10/30), NC제편(2008/10/31), 진로제편(2008/10/31)

17

## 주요 애로사항과 일본의 투자유인 정책



## 애로사항 우선 해결 분야



## 일본의 비관세장벽 중 조치완료 안건

- 1

중제피혁분 유기질 비료 수입금지

□ 2006년 말부터 대일 수출이 개개됨
- 2

폴리슬베이트 사용금지 문제

□ 식품첨가물 폴리슬베이트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 물질로 고시되었음(2008.4.30)
- 3

김 수입 쿼터제 실시

□ 한국정부가 불공정 무역으로 WTO에 제소하였고, 그 후 양국정부는 큰 폭의 쿼터 확대에 합의
- 4

공휴일 항만하역 작업 중단으로 빈번한 제선

□ 일요일·공휴일 작업 사전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하역회사와의 자체 협의에 의해 일요일·공휴일 작업이 전일 신청으로 가능, 사전 협의제 폐지
- 5

견연사에 대한 수입할당제

□ 일본은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1976년부터 한국산 생사, 견연사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였으나, WTO첨유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2004년 이후 폐지

## 일본의 비관세장벽 중 조치완료 안건

### 6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에 대한 일본의 비검역 유해동식물 확대지정 문제

- 일본은 한국 분포 병해충 일부를 비검역 비해충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농림부 보도자료)
- 2005/04/14 64종 -> 111종으로, 2006/10/11 111종 -> 149종으로, 2007/04/12 149종 -> 169종으로 확대 조치함

### 7 국제운전면허증의 일본내 사용 제한

- 일본은 2003년 7월 1일부터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여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도록 함

### 8 주일 한국기업 주재원의 후생연금, 고용보험 문제

- 일본은 일본주재 외국기업 주재원에 대해서도 후생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일 한국기업 주재원의 경우, 동 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일 사회보장협정 체결(2003.10.7~8)로 해결

### 9 투자경영사증 발급기준 명확화

- 투자 경영의 개류가격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당금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 자 혹은 이를 대신한 자가 당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중사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 2인 이상 중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2인 이상 중업원 고용 또는 500만엔 이상의 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중직안 것으로 간주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철강산업

#### 1.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본기업의 계열관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체 등 철강수요자가 철강제품을 가격, 품질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계열관계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일본의 오랜 상관행인 계열관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같은 업종에 중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관계에 의한 철강구매 관행은 철강업체들간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며 외국기업들에게 특이 불리하게 작용함</li> <li>■ 일본업체들은 특이 외국산 특수강에 대해 배타적인 시각을 보임에 따라 同제품부문에서 거래를 상사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구매와 관련한 배타적 상관행을 개선하여 한국기업이 일본업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 2. 철강재 납품관련 영어 견적서 인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재의 경우 발주자의 한국 본사에서 작성된 영어 견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어 견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견적서를 일본어로 바꾸면서 각종 사양을 다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음</li> <li>■ 구미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영어 견적서를 인정하고 있어 평평의 원칙에도 어긋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는 국제거래에 있어 표준화된 언어인 만큼 영어 견적서를 인정해야 할 것임</li> <li>■ 한국에서도 외국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들여올 때 영어 견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거래시 영어 견적서를 기본으로 하는 업체도 많음</li> </ul>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철강산업

#### 3. 공개경쟁프로젝트에서의 일본 철강회사간 담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재의 경우 발주자의 한국 본사에서 작성된 영어 견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어 견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견적서를 일본어로 바꾸면서 각종 사양을 다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음</li> <li>■ 구미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영어 견적서를 인정하고 있어 평평의 원칙에도 어긋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는 국제거래에 있어 표준화된 언어인 만큼 영어 견적서를 인정해야 할 것임</li> <li>■ 한국에서도 외국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들여올 때 영어 견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거래시 영어 견적서를 기본으로 하는 업체도 많음</li> </ul>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건설산업

#### 1. 건설공사 입찰시 보험증권 제출제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보증금 혹은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li> <li>■ 외국 건설회사의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려 해도 일본의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발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지법인 없이 처음 진출하려는 외국 건설회사의 경우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일본 건설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이외에 국내외 은행의 보증서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임</li> </ul>

#### 2. 관급공사 및 대형건설 프로젝트 시 일본철강재 지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급공사 및 대형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는 일본철강회사의 검사증명서 첨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i> <li>■ 또한 설계회사는 도면작성시 철강재의 브랜드 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철강업체에게는 납품경쟁사인 일본철강회사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li> <li>■ 또한 설계회사는 철강재로 일본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증명서는 국제적인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임</li> <li>■ 설계회사는 철강재의 브랜드 명이 아닌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규격의 제시에 그쳐야 할 것임</li> </ul>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건설산업

#### 3. 판급 건설시장에서의 담합에 의한 시장폐쇄성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구매담당자는 효율적인 조달에 의해 원가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그러나 분명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우려로 거래성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보수적인 구매관행을 보임으로써 외국상품의 일본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율적이고 개방된 구매행태 조성일 필요함</li> </ul>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자동차산업

#### 1.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HS분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은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li> <li>그러나 시트원단(Fabric)에 대해서는 자동차용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섬유 관세율 9%를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트원단이 실제로 일반섬유제품용이 아닌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으로서 수입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li> <li>자동차 시트제품이 완성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단 원단형태로 수입된 후 일본에서 최종제품으로 완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시트원단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되므로 무관세 적용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됨.</li> <li>따라서 자동차 시트원단을 사용하는 수요자의 '사용용도 확인서'를 통해 무관세 적용(자동차시트용 직물제품으로 HS번호 부여)</li> </ul>

#### 2. 자동차부품 포장재의 반복사용을 위해 규격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의 포장재로 나무박스 혹은 나무 팔레트가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에는 산업폐기물로 취급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를 처리에 비용이 발생하고 재사용도 어려워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 포장재를 양국간에 반복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규격화</li> </ul>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자동차산업**

**3. 자동차 계속 심사제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검사를 시행하는 민간 차검장의 수입자 검사비용이 일본차에 비해 높음</li> <li>■ 민간 차검장의 경우 일본자동차의 경우는 비용내역을 사전 공개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에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소유자의 차검 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구매의욕 감소</li> <li>■ 일본의 중고차 평균매매 가격이 100만이라고 가정할 때 20만 엔(일본차는 10~15만엔) 정도하는 차검비용은 큰 부담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검 시에 일본차와 수입차의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개정</li> </ul>

**4. 수입자동차 특별 신고제도(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PHP)**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소량 수입 시 적용되는 수입자동차 특별 신고제도의 경우는 검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검사비용이 증가됨</li> <li>■ 연간 2,000대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되는 외국 자동차의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종의 특혜수속으로 한국산 수입차는 수량수입으로 PHP의 인증을 받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량 수입차량의 가격경쟁력 약화</li> <li>■ PHP인증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300대 이하의 경우 누계기준으로 50대마다 1대씩, 300대 초과인 경우는 100대마다 1대씩 신차검사 및 배기가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비용(1대당 4,000~5,000달러)이 부담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HP의 규정개선을 통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검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통신산업**

**1. 외국통신업체에 불리한 통신망 접속요금의 차등적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모든 통신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NTT는 이를 여타 통신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li> <li>■ 그러나 대규모 통신사업자와 군소 사업자에 대해 통신망 사용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음</li> <li>■ 대규모 통신사업자(캐리어)와 상호 접속시에는 통신망 사용료를 조당으로 정산해주고 있으나 일본내 시장규모가 적은 한국업체는 군소사업자로 취급하여 일반전화요금과 같은 체계를 적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금 구조의 차등적용으로 인해 일본진출 한국 통신업체들이 사업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진출규모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외국계 통신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통신망 사용료를 조당 정산방식으로 변경해 들 것을 요망함</li> </ul>

**2. 이동통신 중계기의 무선국 검사절차 간소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전화용 중계기 설치 시 일본 국내법(전파법)에 의해 출력에 상관없이 무선국의 검사를 받아 면허를 취득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으로 10mW이하 출력의 중계기는 전파가 미약해 다른 전자·통신기기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무선국의 검사 및 면허가 필요없음</li> <li>■ 중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지국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면허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mW이하의 저출력 중계기일 경우, 형식승인만으로 설치 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li> <li>■ 한국의 경우 10mW이하 출력의 중계기에 대해서는 무선국 검사 및 면허를 면제하고 있음</li> </ul>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가전산업

#### 1. DVR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법 관련규격 취득 애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VR(Digital Video Recorder)은 전기용품관련 안전인증을 위해 (재)일본품질보증기구(JQA), (재)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정보처리장치등전파장애자주규제협의회(VCCI) 등 3개 안전인증기관 중 1개소로부터 검사를 받아 규격을 취득해야 함</li> <li>■ DVR은 본래 자주관리 대상품목이나 JET 등의 조사 결과, 규격에 미달하면 1억엔 이하의 벌금이나 제품 전량회수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업체로서는 반드시 관련규격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DVR 안전인증검사는 국제 규격인 미국의 UL(Underwrites Laboratories)이나 독일의 TUV 수준을 뛰어넘어 PES(Product Safety Electrical :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 VCCI 등도 충족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까다로움</li> <li>■ 또한 인증기관도 특별법인 3개 밖에 없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검사 및 인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VR 안전인증 검사수준을 국제적인 규격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조정</li> <li>■ 한국이 일본 규격인증기관의 시험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의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해 그 시험결과를 인정</li> <li>■ 한국은 현재 (재)일본품질보증기구를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EKM마크(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li> </ul>

#### 2. 가전제품 재활용 제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소모량, 가전제품 가격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재상품와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li> <li>■ 일본은 가전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2001년 4월부터 '가전제품 재상품화법'을 시행하여, 1차로 TV, 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실시하였고, 2006년에 냉동고가 추가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절전형 소형가전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불리한 경쟁조건이 형성됨</li> <li>■ 제조 또는 수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재상품와 요금은 현대 대상품목에 따라 전기소모량, 제품가격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제품 재상품화법'을 전기소모량, 가격 등을 감안하여 세분해서 내용을 재검토</li> </ul>

## 산업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금융산업

#### 1. 외국은행 일본지점 이익금의 의무적립제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계은행 일본지점의 경우, 이익금이 발생하면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도 아닌 지점의 경우에는 한국소재 본점의 책임하에 모든 경영이 이루어 지에 따라 일본지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본점에서 일본지점으로 보전금을 송금해야 할 정도임</li> <li>■ 따라서 한국본점과 일본지점간에는 자유로운 과실송금이 이루어져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은행 일본지점 이익금의 의무적립제도 폐지</li> </ul>

#### 2. 은행의 미회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은행이 재일한국기업의 본사나 동남아기업 중 부실화가 진전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출의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많음</li> <li>■ 일본세무당국은 이 같은 미회수 이자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의 파산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약정했던 지불이자율에 근거하여 은행 측에 과세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일 한국계 은행으로서 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세무신고시 이익금으로 산입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회수를 포기함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비용을 중지</li> </ul>



대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POSCO Team장  
정 연 태



## I. 현지 투자의 사례

- A사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시장에 제품을 수출해 오면서 현지고객의 편의를 위한 유통기지 건설과 현지 법인 사무실 매입 등 누계 300억엔(3억달러 수준, 한국의 누계 대일투자액 23억달러의 13%)의 투자.
  - 가공센터, 물류기지 등 유통거점 4개소
  - 오사카, 도쿄 지역에 사무실용 부동산 보유

## II. 대일투자의 어려움

- 현지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
- 부지 확보에 대한 정보 부족
- 건설회사 물색에 대한 어려움
- 건설 물자 반입에 따른 세관, 보세창고 활용상의 어려움
- 동종 업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
- 동종업계에서 고객이 감수해야 할 불편함.
- 언론의 보도
- 경제산업성 등 관련 당국의 견제
- 지역 정치인의 반응
- 금융, 세제 지원상의 장벽

## III.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업계 차원의 협력 유도
  - 지나친 경쟁의식 보다는 동일한 고객을 차별화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협력자로서 인식하여 협력관계 구축.
  - 호황(공급부족) 시에는 동반자 관계임을 설득.
-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협력관계 구축
  - 지자체의 우수 투자 유치사례 홍보, 표창 등 홍보활동 강화로 연결.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기업의 활동 적극 소개.
- 여론 활성화 : 언론, 학계(Case study) 등
  - 불필요하게 여론을 선동하는 기사 자제.



# 한·일 기업 간 M&A실태와 확대 방안 모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공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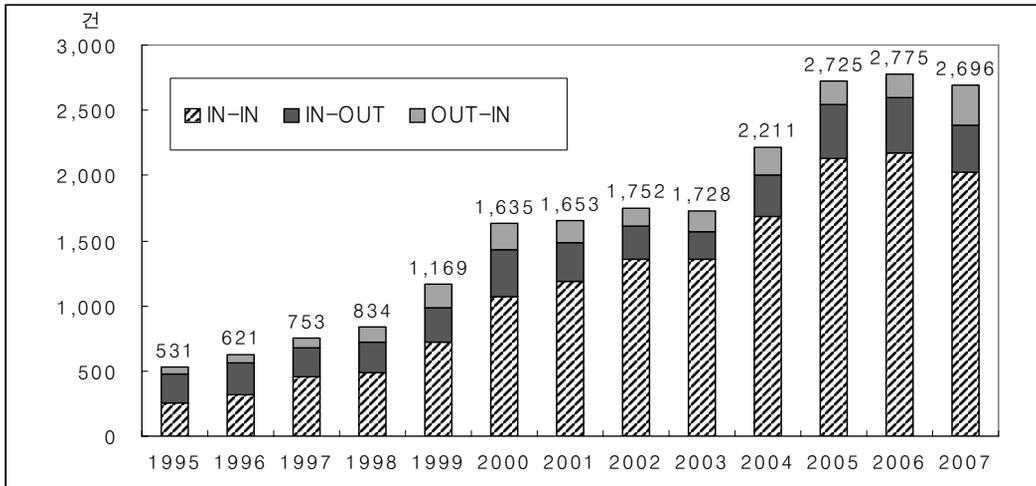
# 한·일 기업 간 M&A 실태와 확대 방안 모색

## 1. 일본기업의 M&A 동향과 특징

### (1) 건수

- 2005년: 2,725건 → 2006년: 2,775건 → 2007: 2,696건
- 2006년의 경우 일본기업간(IN-IN) M&A는 전체의 78.4%로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기업의 외국기업(IN-OUT) M&A 비중은 15.2%, 외국기업의 일본기업(OUT-IN) M&A 6.5%
- 2007년의 경우 IN-IN 비중 75.8%, IN-OUT 비중 13.6%, OUT-IN 비중 11.4%

<그림 1> 일본의 M&A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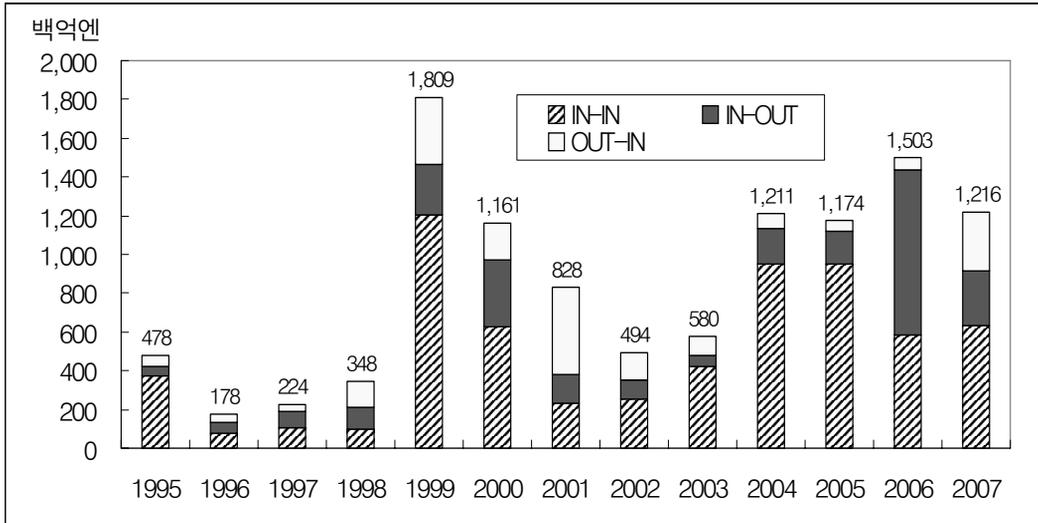


자료: RECOF, 「MARR」, 2008. 2

## (2) 금액

○ 2005년: 11조 7,416억엔 → 2006년: 15조 312억엔 → 2007: 12조 1,587억엔

<그림 2> 일본의 M&A 금액 추이



자료: RECOF, 「MARR」, 2008. 2

○ 비중 추이

<표 1> 일본의 M&A 금액 비중 추이

	2005	2006	2007
IN-IN	81.2	49.8	53.9
IN-OUT	14.1	56.9	23.1
OUT-IN	4.7	4.2	24.8

자료: RECOF, 「MARR」, 2008. 2

### (3) M&A 형태와 목적

#### □ M&A 형태

##### ○ 일본의 형태별 M&A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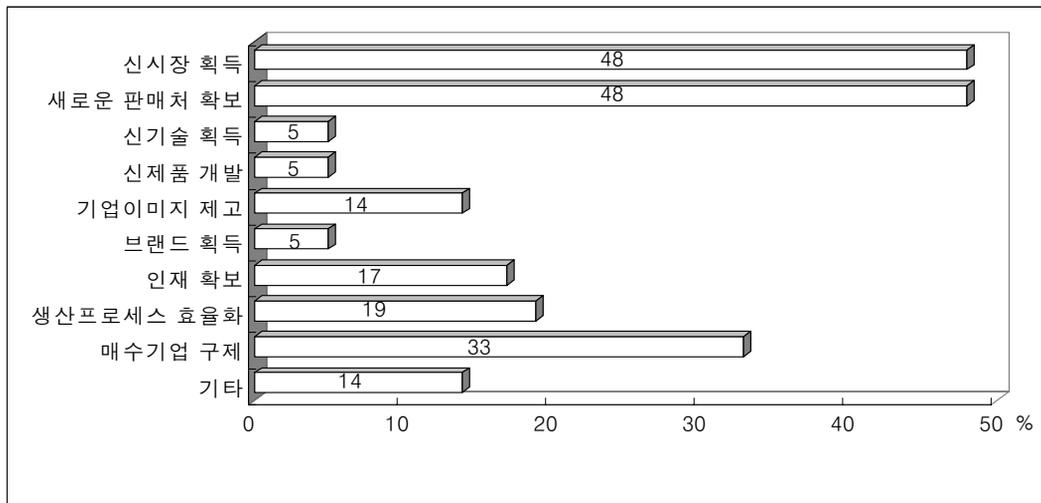
- 2007년의 경우 매수 41.8%, 자본참가 29.1%, 사업양도 15.3%, 출자확대 10.9%, 합병 2.9%(RECOF의 통계)

#### □ 목적

##### ○ 매수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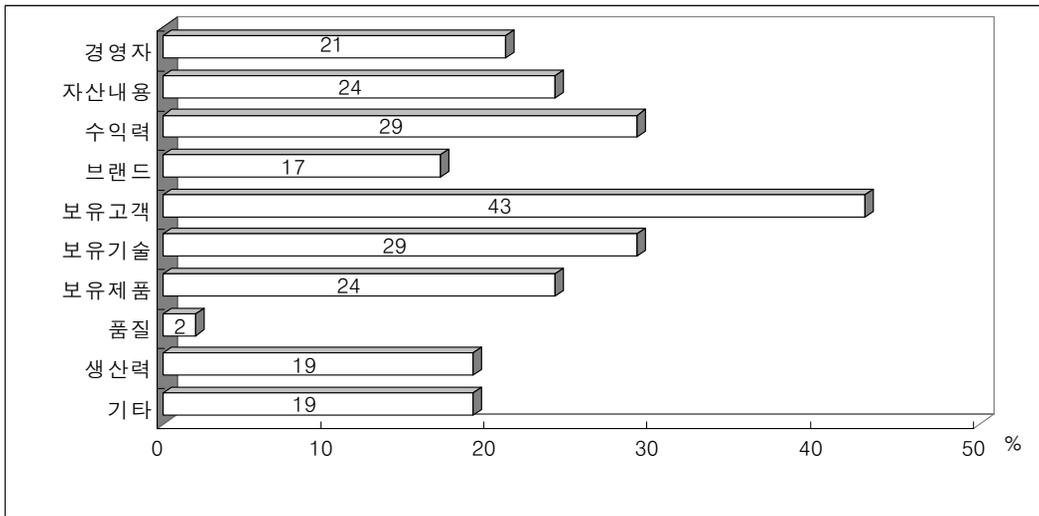
- 신속한 신규사업진출(신상품, 신시장), 사업규모 확대(시간 단축), 기술(R&D, 특허, 노하우) 확보, 인적 자산 확보, 사업(영업)자산 확보

<그림 3> 매수기업의 M&A 목적(n=42,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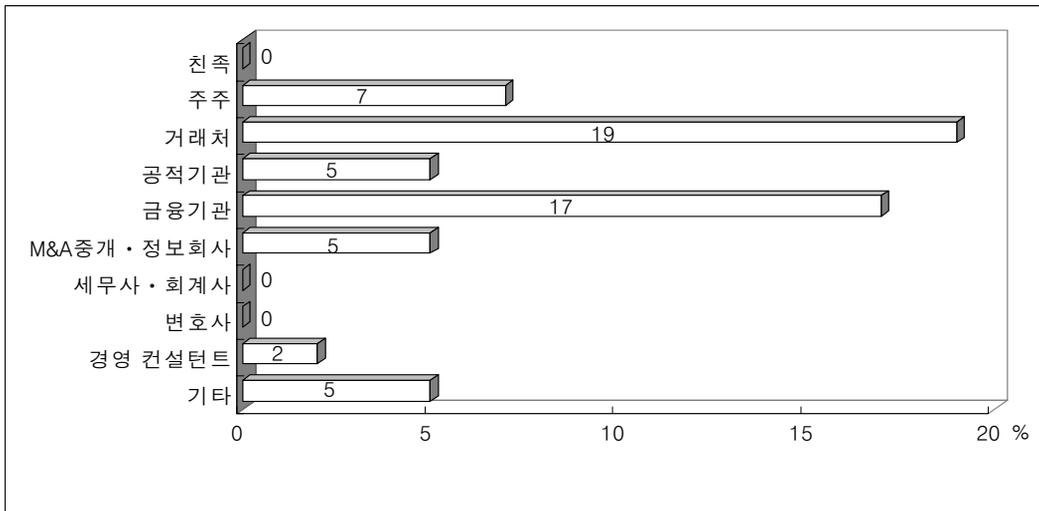
자료: 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 中小企業のM&Aの實態に関する調査研究, 2008. 2

<그림 4> 매수기업의 M&A 대상기업 선정시 중시하는 사항(n=42, 복수응답)



자료: 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 中小企業のM&Aの實態に關する調査研究」, 2008. 2

<그림 5> M&A 대상기업 소개는? (n=42,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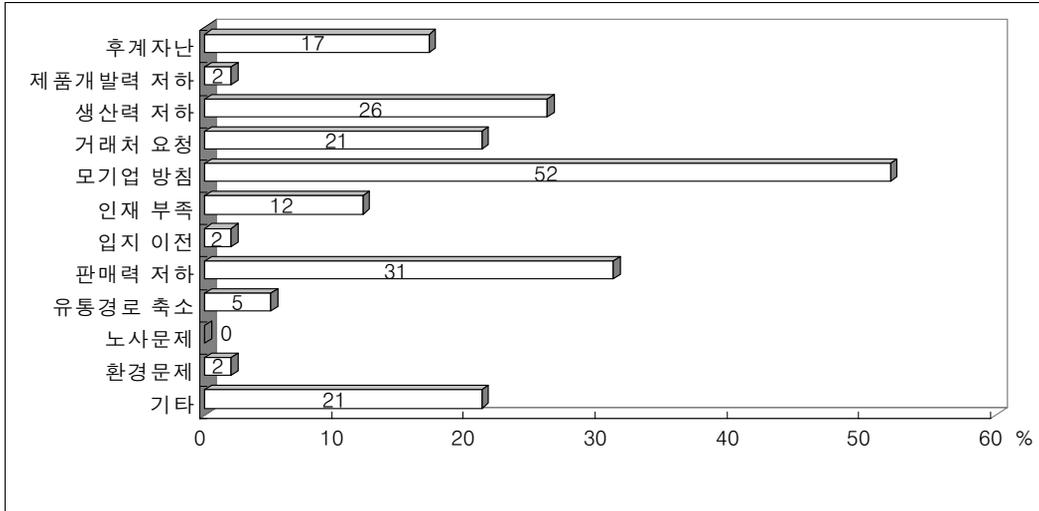
자료: 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 中小企業のM&Aの實態に關する調査研究」, 2008. 2

○ 매도측

- 사업승계(후계자 부재), 사업재생(서바이벌), 업적부진(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전력

분야 구축), 경영철학(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그림 6> 매도기업이 M&A에 응한 계기(n=42, 복수응답)



자료: 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 中小企業のM&Aの實態に關する調査研究, 2008. 2

#### (4) 제도적 정비와 M&A 증대

##### □ 일본의 M&A 동향 장기 추이 개관

- 1980년대 후반기의 버블기에는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
  - 특히 미국의 영화나 빌딩에 대한 투자 급증은 일본기업에 대한 반감을 야기시킬 정도
-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와 더불어 업계 재편 등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M&A는 주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
- 2005년 이후에는 M&A 활성화와 동시에 적대적 M&A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수양면의 균형있는 제도 구축에 노력

□ 제도적 정비

- 일본 정부는 1990년대말부터 기업의 재생·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 상법, 민사재생법, 산업재생법 등의 법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M&A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 기업법제면에서도 지주회사의 해금(1997년)을 계기로 조직재편을 촉진하는 제도 개편이 진전되어 우호적 M&A 건수가 확대되고 주요 산업의 재편도 가속화

<표 2>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주요 기업재편 관련 법제 개혁

	회사법제	증권거래법	세제	기타
'90년대	* '97 합병제도 간소화 * '99 주식교환·이전제도 창설		'99 주식교환·이전세제 정비	'97 (독점금지법)지주회사 해금
'00년~'05년	* '00 회사분할제도 창설 * '05 신회사법 성립	* '05 입회외 거래에 공개매입(TOB)규제 적용	* '01 조직재편세제 정비 * '02 연결납세제도 정비	* '03 (산업활력재생법) 산업재편을 위한 지원 강화 * '05 대수방어책에 관한 지침책정 * '05 자민당 기업통치위원회
'06년~	* '06 신회사법 시행:조직재편 절차 간소화 * '07합병대가의 유연화('07. 5월부터 3각 합병 허용)	* '06 공개매입규제·대량보유보고제도 개정 * '07 증권거래법이 금융상품거래법으로	'06조직재편세제에 주식교환·이전세제를 도입	

자료: 경제산업성

## (5) 일본 M&A의 특징

### □ 일본의 적대적 M&A 건수는 극히 낮은 수준

-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M&A건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적대적 매수의 비율은 극히 낮으며, 미국과 영국은 각각 0.5%, 0.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은 0.1%로 극히 낮음(경제산업성).

### □ 적대적 M&A 방어 체제 구축 확산

- 일본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추진한 것은 2004년 이후이며, 2006년부터 방어책 도입건수가 급증하기 시작
  - 방어책(2004년-2007)을 보면 사전경고형이 58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신탁형 라이트플랜이나 기타는 각각 24건과 13건에 불과

### <표 3> 일본의 매수 방어책의 분류

	2004	2005	2006	2007	합계
사전경고형*	0	20	163	402	585
신탁형 라이트 플랜	0	5	9	10	24
기타(拒否權附株式 등)**	2	4	4	3	13
導入 會社 數(社)	2	29	176	415	382

자료: RECOF, 「MARR」, 2008. 2

주: \*는 新株豫約權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條件決議型도 포함.

\*\*는 2005년 1건, 2006년 1건은 事前警告型과 信託型의 혼합형 포함

### □ 기타 일본의 M&A 특징

- M&A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존재하고 일본의 M&A 관련 법제도가 복잡하고, 규제당국의 규제 엄격<sup>1)</sup>

1) 제8회 日・中經濟討論會, 「対日直接投資の抜本的拡大に向けた5つの提言」, 2008. 5. 19.의 M&A 관련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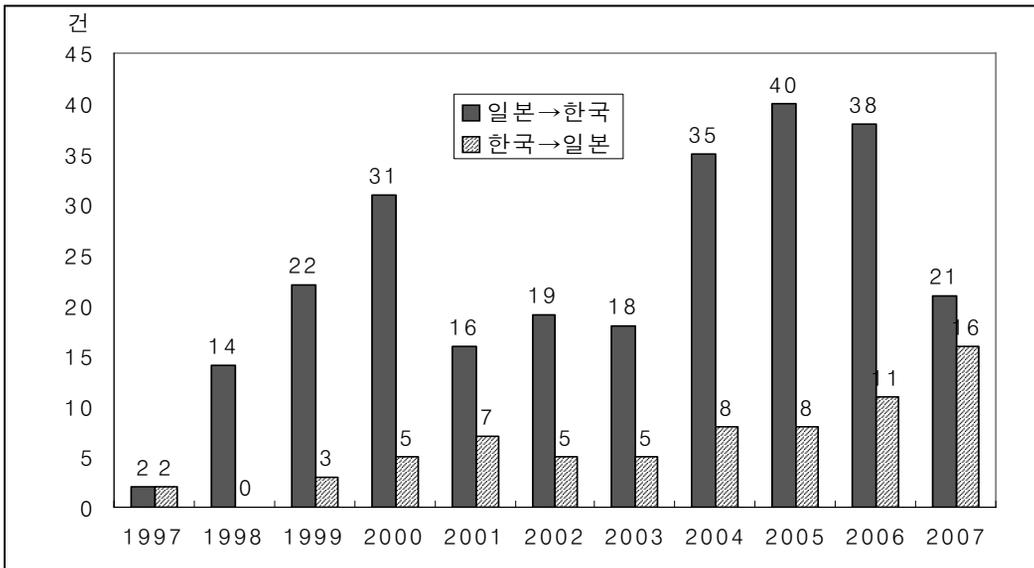
- M&A시에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종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고려 필요
- 종신고용 등의 의식이 강해서 M&A 후에 인력감축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곤란
- M&A시에 매각측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매수가격 외에도 매수측의 선정이유를 밝혀야 함.
- 외국인에게 CEO를 맡기는 것에 대한 저항감 존재
- 대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계열 관계에 있는 일본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음.

## 2. 한·일 기업간의 M&A 실태

### (1) 전수

- 일본의 CROSS BORDER M&A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
  - 2005년: 8.1% → 2006년: 8.2% → 2007: 5.5%
- 일본의 OUT-IN M&A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
  - 2005년: 4.3% → 2006년: 6.1% → 2007: 5.2%
- 일본의 IN-OUT M&A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
  - 2005년: 9.7% → 2006년: 9.0% → 2007: 5.7%

<그림 7> 한·일간 M&A 건수 추이



자료 : RECOF

## (2) 금액

○ 일본의 CROSS BORDER M&A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

- 2005년: 3.6% → 2006년: 2.3% → 200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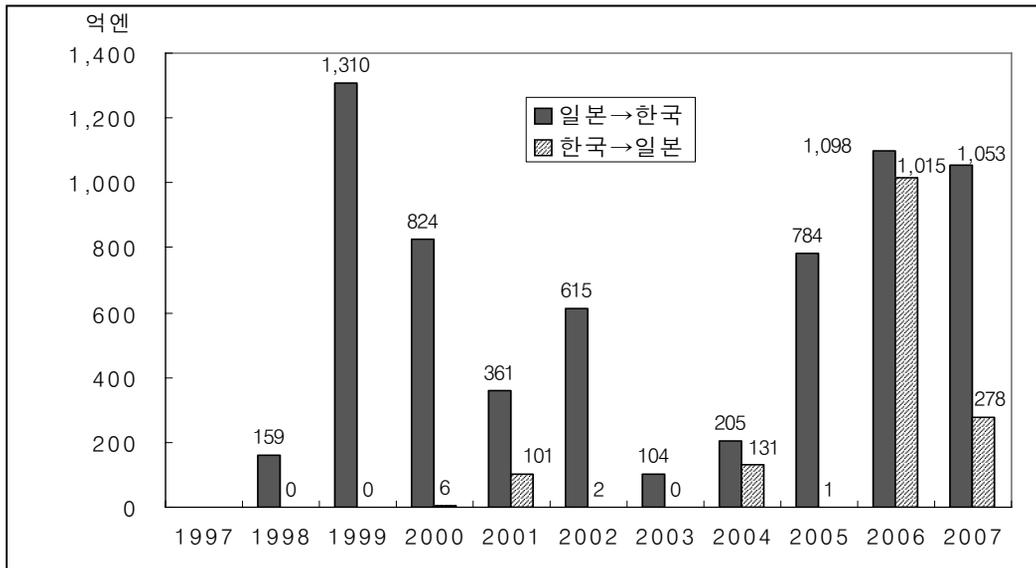
○ 일본의 OUT-IN M&A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

- 2005년: 0.0% → 2006년: 16.1% → 2007: 0.9%

○ 일본의 IN-OUT M&A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

- 2005년: 4.7% → 2006년: 1.3% → 2007: 3.7%

<그림 8> 한·일간 M&A 금액 추이(공표기준)



자료 : RECOF

### (3)업종별

- 제조업의 비중은 양국 공히 40% 이내
- 한국은 상대적으로 상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서비스, 금융 등의 비중이 큼.
- 기타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정보, 오락 등이 공통적으로 많고, 일본의 경우에는 서비스 분야가 많음.
- 한국의 일본기업 M&A 건수는 극히 미약
  - 2005년 제조업 5건(화학 2건, 기계, 전기, 요업 각 1건), 2006년 3건(철강 2건, 기계 1건), 2007년 6건(정밀 3건, 전기 1건, 식품 1건, 석유·석탄 1건). 특히 2006년의 경우 대규모 M&A투자가 있었음.

<표 4> 양국간 업종별 M&A 건수(2005-2007년 누계)

	한국기업의 일본기업 M&A		일본기업의 한국기업 M&A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제조업	14	40.0	36	36.4
상업	7	20.0	6	6.1
금융	1	2.9	8	8.1
기타	13	37.1	47	47.5
합계	35	100.0	99	100.0

자료 : RECOF

#### (4) 규모별

- 규모별 M&A 건수를 보면 한국은 1억엔 미만, 일본은 1억엔-10억엔 미만이 가장 많음.

<표 5> 양국간 규모별 M&A 건수(2005-2007년)

	한국기업의 일본기업 M&A				일본기업의 한국기업 M&A			
	2005	2006	2007	3년 합계	2005	2006	2007	3년 합계
1,000억엔 이상	0	0	0	0	0	0	0	0
500억엔-1,000억엔 미만	0	1	0	1	1	1	0	2
100억엔-500억엔 미만	0	2	2	4	0	2	5	7
50억엔-100억엔 미만	0	2	0	2	0	3	0	3
30억엔-50억엔 미만	0	0	0	0	1	0	1	2
10억엔-30억엔 미만	0	2	1	3	2	5	1	8
1억엔-10억엔 미만	0	0	6	6	16	18	5	39
1억엔 미만	2	1	3	6	6	4	4	14
공표 없음.	6	3	4	13	14	5	4	23
해소	0	0	0	0	0	0	1	1
합계 (건)	8	11	16	35	40	38	21	99

자료 : RECOF

### 3. J사의 일본 제조업체 M&A 사례(인터뷰 결과)

#### (1) 해당 기업을 M&A한 배경과 목적

- 일본 진출, 즉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일본내 근거지를 구축 필요
  - 일본내 제조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조에도 도움이 되고, 일본기업과의 로컬 거래 확대에도 기여

#### (2) 해당 일본기업의 개요

종업원수	31명	자본금	3천만엔
주생산품목	금형제조품, 기능부품의 판매, 수출입	업종	제조업
핵심역량	TV용 금형, 휴대폰 부품		

#### (3) 인수 경위

- 일본내 제조업 자체가 동남 아시아 또는 기타 국가로의 진출이 많은 시점에서 일본내 중소 제조업의 메리트는 열악 (폐사에서 인수, 합병한 기업도 마찬가지)
- 일본에 제조 근거지를 구축하는 것은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었음.
- 반대로 동사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시각 존재

#### (4) 해당 기업 M&A의 효과

- 실제 일본의 제조 기반을 보유·선전함으로써 일본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수주를 받을 수 있었고, 동사의 중점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 제조 거점에 대한 관심도 확대
- 또한 기술적으로도 한국에서 취약한 분야의 지원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업체소싱도 원활하게 되었음.
- 일본 내의 우수 기술 보유 하청업체를 선정, 숙련된 기술, 노하우의 취득이 용이해지는 등 메리트 향유

#### (5) 인수후의 평가 및 사후 조치

- 동사는 이번 M&A가 일본거점에서의 일본기업과의 거래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거점의 對日 거래 확대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
- 인수후에 일본기업의 종업원/경영진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무마시켰나?
  - 유능한 현지인 대표를 고용하였으므로 기존 종업원등의 불안감 등은 없음.
  - 또한 인수 후에도 기존(인수, 합병 이전)과 별반 차이없는 제조 본연의 업무가 중심이 되었음.
- 오히려 현지 일본종업원도 추가적으로 수출입 관련 무역업무, 한국제조기반의 영업 등을 수행( 추가 인원이 진행)함으로써 불안감은 커녕 회사의 성장을 실감

## (6) 일본기업M&A에 있어서의 제언

- 한국기업의 일본기업 M&A시 적합한 업종선택, 기존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미지, 역량 등 시장조사, 자사의 경쟁력 파악이 중요
- 소비자(사용자)의 요구 수준이 엄격하고 꼼꼼한 일본 시장이지만 거래를 시작하고 대면하다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면도 많고 장기적 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생각

〈J사의 담당자 인터뷰에 의거 작성〉

## 4. 활성화 방안

### (1) 양국간 M&A 확대 필요성

- 현재 극히 실적이 부진하나 향후 금융위기의 심화와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 양국간 M&A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
- 한국기업의 일본기업 M&A의 메리트
  - 일본시장 진출 확대의 교두보
  - 일본기업의 뛰어난 기술력 활용
  - 세계시장 진출의 글로벌 거점 확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core competence) 부분에 집중
- 일본기업의 한국기업 M&A의 메리트
  - 한국내수 시장 확보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 규모의 경제 확보와 경쟁 압력 완화

## (2) 확대 방안

### □ 일본기업 M&A 시에는, 일본의 M&A 중개기관 활용

- 대표적인 M&A 전문 중개기관으로는 RECOF(일본 최대 업체), 일본M&A센터(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승계형 M&A에 강점), Value Creation(벤처기업 중심), CGA(대기업 프로젝트 중심), AER Corporation(성장기업 중심) 등이 있음.
- 특히 (주) RECOF는 M&A에 관한 종합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M&A 중개기관(종업원 110명)
  - M&A 전략 제안·컨설팅, M&A 중개 업무, M&A 전문 월간지(MARR) 발행하고, (주) 레코프 데이터를 자회사로 보유(1985년부터 일본의 M&A 데이터 보유)
- 일본M&A센터는 일본 전국의 공인회계사·세무사가 공동 출자하여 1991년에 설립된 독립계 회사로, 종업원 50명, 자본금 10억엔 규모로 400건 이상의 계약 성사 실적 보유
  - 동사는 일본내 200여개의 지역 M&A센터, 지방은행·신용금고 등 200개 점포, 동경,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전역의 상공회의소 등과의 전국적 네트워크 확보한 중소·중견기업 전문 M&A 중개 기관

### □ 우호적 M&A 추진 필요

- 적대적 M&A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가능한 한 우호적 M&A 추진 필요
- 중소기업은 특히 사장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거래가 중심이므로 현지 경영인의 활용 및 협조가 필수적
  - 동시에 기업승계가 어려운 고도기술 중소기업의 모색, 현지 고용 승계 보장 등 철저한 사후 대책 수립 필요

- 특히 우리기업의 일본개업 M&A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화 중시전략이 필요
  - 가업승계가 어려운 일본 중소부품업체 M&A를 추진하면 상호 win-win할 수 있음.
  - 일본도 점차 이공계 및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도 경영이나 가업승계가 곤란한 기업이 증대
  - 한국의 유명기업체가 일본기업을 M&A함으로써 M&A되는 기업의 종업원이 심리적 위축 방지 등 인력 유출 방지 대책 필요
  
- 한국측도 M&A 관련 인프라 정비 필요
  - M&A 전문 중개 기관 육성
  - M&A 전문 인력 양성
  - M&A 관련 경험 축적
  - M&A 관련 기업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 필요
  
- 일본측도 M&A 장애요인 해소에 가일층 노력 필요
  -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 필요
  -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에 대한 부정적 평판 극복
    - 3角合併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방식에 입각한 외국기업의 일본기업M&A는 1건에 불과

-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 강화가 M&A 자체를 원천 봉쇄하지 않도록 배려 필요
  
- 양국간 M&A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 신설·강화 검토
  
- 한·일 양국간 투자 확대차원에서도 M&A 확대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양국간 M&A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 신설·강화 검토
  - 기존 대화채널에서 M&A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 필요
  
- 양국간 M&A 활성화를 위한 협력 분위기 조성 및 관련 제도의 통일화 모색



## 참고 자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규약

2007년 3월 16일

1.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신산업무역회의로 한다

## 2. 조직

- (1) 본 회의는 한일 양국 경제계의 연락·협의기관으로서 (사)한일경제협회 및 (사)일한경제협회 회원 등으로 조직된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산하 회의체로서 운영되며, 별도로 정하는 활동을 통해 경제인회의를 보좌·보완한다.
- (2) 양국은 매년 1회, 혹은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일합동 신산업무역회의(이하,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 (3) 합동회의는 양국 각각 의장(체어맨) 1명, 부의장(부체어맨), 코디네이터 약간명을 둘 수가 있다. 의장은 본회의의 경제인회의에 대한 대표책임을 맡는다. 부의장, 코디네이터는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4) 합동회의는 각국의 국내회의의 모든 위원이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양국은 본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국내회의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

## 3. 목적과 활동

- (1) 경제인회의를 보좌·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인식 공유와 아울러 경제인회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 등에 제언·요망하는 것을 본 회의의 목적으로 한다.
- (2) 전항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양국 경제의 현상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검토를 한다.
  - 2) 합동회의는 이하 4개의 미션에 대해 한일 공통의 과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산업과 무역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서 토의한다. 4개의 미션은 ①한일간의 무역확대 ②한일간의 투자확대 ③한일간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④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를 칭한다.
  - 3) 상기 사항에 관해 애로사항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업계 등에 제언·요망을 경제인회의에 제안한다.
  - 4) 제언·요망을 실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양국이 각각 또는 합동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의 활동을 한다.
  - 5) 기타 각 국내회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토의, 의견교환을 한다.

#### 4. 운영

- (1) 합동회의는 원칙적으로 교대로 양국내에서 개최한다.
- (2) 합동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의의 분과회 등을 둘 수 있다. 실시할 경우에는 의장 등의 인선은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3) 합동회의의 활동상황은 다음에 개최되는 경제인회의에 보고한다.
- (4) 합동회의 개최기일은 경제인회의 개최 후 반년 경과시점을 목표로 한다. 기간, 의제, 기타 개최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항목은 원칙적으로 양국내회의의 동의에 의거하여 사전에 결정한다. 합동회의는 필요에 따라 연도내 복수회의 개최도 실시가능한 것으로 한다.

#### 5. 경비

합동회의 개최에 있어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각 경비는 기구, 비품은 기본적으로 주최국 부담으로 하고 리셉션은 양국이 절반씩 부담하며, 참가자의 여비, 체재비 등은 각각 양국 개별부담으로 한다.

#### 6. 사무국

- (1) 합동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 국내회의에 각각 기획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의 사무국을 둔다.
- (2) 양국 사무국은 의장, 부의장(부체어맨), 코디네이터와 양국 경제협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사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 (3) 사무국장은 양국 경제협회에서 선출된 위원(간사위원)이 맡는다.

본 규약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하고, 양문(兩文)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규약은 한국측 및 일본측의 체어맨이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한다.

이상

##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開催実績

年度 回数	期場 場所	兩 參加 國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1999年 第1回	10. 14~15  日 本 千 葉 (カズサイキ)	<p>1. 韓國側 -姜 萬 洙 채이맨 (KANG, Man-Soo) 金 都 亨 코디네이터代行 (KIM, Do-Hyung) 等 26名</p> <p>2. 日本側 -秋山 富一 채이맨 (AKIYAMA Tomiichi)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OZIMI Shozo) 等 32名</p>	<p>1. 第 1 Session [Theme : 韓日經濟現況의 認識과 意見交換] -日時 : 10. 14(木) 15:40~18:10 -場所 : 카즈사이크 2F 大會議室 202B -主題發表 ・ 日本側 : 立花 宏(TACHIBANA Hiroshi) (社)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日本에 있어서의 産業競爭力 強化에 대한 努力』 ・ 韓國側 : 李地平(LEE, Ji-Pyeong) LG經濟研究院 研究Center 副研究委員 『韓國企業의 經營改革과 韓日協力方案』</p> <p>2. 第 2 Session [Theme : 兩國의 企業風土와 商慣習 “글로벌 스탠더드”와 關連하여- 日本에서 본 韓國, 韓國에서 본 日本 -評價와 期待,世界市場을 指向하여-] -日時 : 10. 15(金) 09:00~12:00 -場所 : 카즈사이크 2F 大會議室 202B -主題發表 ・ 日本側 : 村上 弘芳(MURAKAMI Hiroyoshi)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태마의 目的과 進行方法 및 韓國의 企業風土와 商慣習 하여링 結果』 ・ 韓國側 : 金大郁(KIM, Dai-Wook) 駐日韓國企業聯合會 會長 『日本의 企業文化와 商慣行 -日本 經濟界에 바람-』</p>	<p>1. RECEPTION -日時 : 10. 14(木) 18:30~20:00 -場所 : HOTEL 2F 有明の間</p> <p>2. 午餐 懇談會 -日時 : 10. 15(金) 12:00~13:20 -場所 : HOTEL 2F 有明の間</p> <p>3. OPTION PROGRAM(觀光) -日時 : 10. 15(金) 16:00~18:00 -場所 : 우미호마루</p>

年度 回次	期場 場所	兩參 加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0年 第2回	11. 16~17 韓 國 서 울 (Trade Tower)	<p>1. 韓國側 -趙 健 鎬 체이맨 (CHO, Kun-Ho)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Chul) 等 37名</p> <p>2. 日本側 -秋山 富一 체이맨 (AKIYAMA Tomiichi)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OZIMI Shozo) 等 34名</p>	<p>1. 第 1 Session [Theme : 韓日 各 各의 經濟 現 況 과 課 題 에 대 하 여]</p> <p>-日時 : 11. 16(木) 15:30~18:10 -場所 : 49F 韓 國 貿 易 協 會 大 會 議 室 -主 題 發 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 國 側 : 許 贊 國 (HUH, Chan-Guk) 韓 國 經 濟 研 究 院 先 任 研 究 員 및 巨 視 室 長 『韓國經濟의 現況과 展望』</li> <li>· 日 本 側 : 藤 原 勝 博 (FUJIWARA Katsuhiko) (社)經 濟 團 體 連 合 會 常 務 理 事 『日本의 經濟 情 勢 와 向 後 課 題』</li> </ul> <p>2. 第 2 Session [Theme : 今 後 의 韓 日 經 濟 協 力 方 案 에 대 하 여]</p> <p>-日時 : 11. 17(金) 09:00~14:30 -場所 : 49F 韓 國 貿 易 協 會 大 會 議 室 -主 題 發 表</p> <p>(PART I) 韓 日 部 品 · 素 材 產 業 協 力 方 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 國 側 : 宋 錫 俊 (SONG, Seok-Joon) (株)巨 義 代 表 理 事 『“韓 日 部 品 · 素 材 產 業 協 力 方 案”에 대 하 여』</li> </ul> <p>(PART II) 韓 日 自 由 貿 易 協 定 (F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本 側 : 山 澤 逸 平 (YAMAZAWA Ippei) 日 本 貿 易 振 興 會 아 시 아 經 濟 研 究 所 所 長 『21世 紀 의 바 람 직 한 日 韓 經 濟 關 係』</li> <li>· 韓 國 側 : 金 都 亨 (KIM, Do-Hyung) 啓 明 大 學 校 國 際 學 部 教 授 『韓 日 FTA 推 進 을 위 한 知 的 · 物 的 인 프 라 整 備』</li> </ul>	<p>1. RECEPTION -日時 : 11. 16(木) 18:30~20:00 -場所 : 51F 貿 易 CLUB 다 이 아 몬 드</p> <p>2. 午 餐 懇 談 會 -日時 : 11. 17(金) 12:00~13:20 -場所 : 51F 貿 易 CLUB 다 이 아 몬 드</p> <p>3. OPTION PROGRAM(見 學) -日時 : 11. 17(金) 15:00~16:30 -場所 : 김 치 博 物 館</p>

年度 回次	期間 場所	兩國 參加者	主要 會議 內容	其他 活動
2001年 第3回	11. 15~17 日本 福岡 (福岡 SOFT RESEARCH PARK)	1. 韓國側 -趙健鎬(CHO, Kun-Ho) 李洙喆(LEE, Soo-Chul) 等 18名 2. 日本側 -秋山富一(akiyama Tomiichi) 大慈彌(oshimi Shozo) 等 30名	<p>1. 第 1 Session [Theme : 在韓 日本企業에서 본 韓國經濟, 在日 韓國企業에서 본 日本經濟] -日時 : 11. 15(木) 15:30~18:00 -場所 : 2F SRP HALL -主題發表 ・日本側 : 永宮 直史(NAGAMIYA Tadashi) 野村總合研究所 SEOUL支店長 『韓國의 經濟改革 評價와 向後의 經濟課題』 ・韓國側 : 金貞湜(KIM, Jung-Sik) 駐日韓國企業聯合會 會長, 現代(JAPAN(株)) 代表取締役 社長 『在日 韓國企業에서 본 日本經濟』</p> <p>2. 第 2 Session [Theme : 韓日 FTA의 實現을 향하여] -日時 : 11. 16(金) 09:00~12:00 -場所 : 2F SRP HALL -主題發表 ・日本側 : 藤原 勝博(FUJIWARA Katsuhiko) (社)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日韓 産業協力和 FTA의 展望』 ・韓國側 : 鄭 仁 教(CHEONG, In-Kyo)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 FTA研究TEAM長 『韓·日 FTA의 經濟的 效果와 戰略的 重要性』</p> <p>3. 第 3 Session -日時 : 11. 16(金) 13:00~15:20 -場所 : 2F SRP HALL [Theme① : 九州地域과 韓國의 經濟交流에 대하여] -主題發表 ・日本側 : 石原 進(ISHIHARA Susumu) 九州旅客鐵道(JR九州) 事務取締役 『九州·韓國의 經濟交流에서 본 日韓自由貿易協定에 대하여』 [Theme② : 韓日間の 物流 協力方案에 대하여] -主題發表 ・韓國側 : 李富植(YI, Boo-Sik) 交通開發研究院 院長 (芮忠烈(YE, Choong-Yeol) 東北亞·物流·經濟研究센터 責任研究員 代讀) 『韓日間 物流 協力方案』</p>	<p>1. RECEPTION -日時 : 11. 15(木) 18:30~20:00 -場所 : HOTEL OKURA 福岡</p> <p>2. 午餐 懇談會 -日時 : 11. 16(金) 12:00~13:00 -場所 : IF NOUVELLE文雅</p> <p>3. OPTION PROGRAM A : 大宰府(Dazaifu) 見学 -日時 : 11. 17(土) 09:30~11:30 B : 立命館아시아太平洋大學 視察 -日時 : 11. 17(土) 08:00~10:00</p>

年度 回次	期間 場所	兩國 參加者	主要 會議 內容	其他 活動
2002年 第4回	11. 14~16  韓國 濟州道 (濟州新羅 HOTEL)	1. 韓國側 -趙 健 錦 체이렌 (CHO, Kum-Ho)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Chul) 等 20名  2. 日本側 -秋山 富一 체이렌 (AKIYAMA Tomichi) 御巫 清美 코디네이터(代行 (MIKANAGI Kiyoyoshi) 等 18名	1. 第 1 Session [Theme : 韓日 經濟現況의 認識과 意見交換] -日時 : 11. 15(金) 09:00~12:00 -場所 : 5F Halla I -主題發表 · 韓國側 : 左承喜(JWA, Sung-Hee)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韓國經濟 概觀 - 最近 經濟動向, 展望, 政策課題를 中心으로』 · 日本側 : 金子 周平(KANEKO Shuhei) 미즈호綜合研究所(株) 上席理事 『日本經濟 現況과 向後의 課題』  2. 第 2 Session [Theme : 世界經濟의 動向과 兩國의 經濟關係 - 世界經濟가 韓日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 韓日關係의 安定과 緊密化 -] -日時 : 11. 15(金) 13:20~16:30 -場所 : 5F Halla I -主題發表 · 韓國側 : 丁文建(CHEONG, Mun-Kun) 三星經濟研究所 經濟研究本部長(專務) 『世界經濟 展望과 韓·日通商 Issue』 · 日本側 : 角田 博(KADOTA Hiroshi) 日本經濟團體連合會 國際協力本部長 『通商政策을 둘러싼 世界的 흐름과 韓日協力 展望』	1. RECEPTION -日時 : 11. 14(木) 19:00~20:30 -場所 : 5F Halla II  2. 午餐 交流會 -日時 : 11. 15(金) 12:10~13:10 -場所 : 5F Halla II  3. OPTION PROGRAM(見學) -日時 : 11. 16(土) 08:30~11:30 -場所 : 住狀節理, 盆栽藝術院

年度 回次	期間 場所	兩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3年 第5回	11. 27~29  日 本 東 京 (Hotel Okura Tokyobay)	1. 韓國側 -李 錫 瑛 세이옌 (LEE, Suk-Young)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Chul) 等 17名  2. 日本側 -木村 伸一 세이옌 (KIMURA Shinichi) 安武 史郎 코디네이터 (YASUTAKE Shiro) 等 40名	<p>1. 第 1 Session [Theme : 韓日中小企業提携에 대해 -日時 : 11. 28(金) 09:40~12:00 -場所 : 2F Crownball Room -主題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側 : 高田 伸朗(TAKADA Nobuaki) 野村總合研究所 研究開發센터 上級컨설턴트 『韓日 中小企業交流의 今後の 展開에 대해』</li> <li>· 韓國側 : 許南整(HUH, Nam-Jung)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 『韓日 兩國 中小企業間 相互補充 事業 推進經過』</li> </ul> <p>2. 第 2 Session [Theme : 韓日産業클러스터(Cluster)計劃事例-韓日 地方産業提携를 指向하여-] -日時 : 11. 28(金) 13:30~15:50 -場所 : 2F Crownball Room -主題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側 : 井上 裕行(INOUE Hiroyuki) 經濟産業省 産業클러스터計劃推進室 立地環境整備課長 『産業클러스터 計劃에 대하여』</li> <li>· 韓國側 : 洪珍基(HONG, Jin-Ki) 産業研究院 地域産業Team長 『韓國의 産業클러스터 政策과 韓日 産業協力 方案』</li> </ul>	<p>1. RECEPTION -日時 : 11. 27(木) 18:30~20:00 -場所 : 2F Victoria Room</p> <p>2. 午餐 懇親會 -日時 : 11. 28(金) 12:00~13:20 -場所 : 1F 桃花林</p>

年度 回次	期 間 場 所	兩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4年 第6回	11. 18~19 韓 國 慶州市 (HotelHyundai)	1. 韓國側 -李 錫 瑛 체이렌 (LEE, Suk-Young)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Chul) 等 53名 2. 日本側 -麻生 泰 체이렌 (ASO Yutaka) 高梨 圭介 코디네이터 (TAKANASHI,Keisuke) 等 31名	1. 分野別 自由討論 -日時 : 11. 18(木) 16:30~19:00 -場所 : 2F Sapphire -테마 : 韓日FTA推進에 따른 分野別 協力 · 貿易分野 : (진행) 김도형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교수 · 機械分野 : (진행) 박양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電氣·電子·IT分野 : (진행) 이감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 全體會議 -日時 : 11. 19(金) 09:10~12:40 -場所 : BIF 컨벤션홀 -테마 : 韓日FTA關聯 · 韓國側 : 정재화 (사)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장 『韓日FTA의 추진방안과 기업의 대응과제』 · 日本側 : 角田 博(KADOTA, Hiroshi)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參與 『韓日FTA-진정한 파트너십 구축과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을 지향하여』	1. RECEPTION -日時 : 11. 18(목) 19:00~20:30 -場所 : BIF 다이아몬드홀 2. 午餐 懇親會 -日時 : 11. 19(목) 13:00~14:30 -場所 : BIF 토포즈 3. 產業視察 -日時 : 11. 19(목) 15:00~18:30 -場所 : (주)자원메디칼

年度 回次	期場 場所	兩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5年 第7回	11. 21 ~ 23 日 本 京都市 (京都全日空Hotel)	1. 韓國側 -李 錫 英 체이렌 (LEE, Suk-Young) 李 洙 誥 코디네이터 (LEE, Soo-Chul) 等 30名 2. 日本側 -蘆 生 泰 체이렌 (ASO Yutaka) 高 梨 圭 介 코디네이터 (TAKANASHI, Keisuke) 等 33名	1. 第 1 Session (議題：韓日企業의 競爭力과 連帶深化) - 主題發表 <日本側> ・ 主 題：『도레이그룹의 韓國에서의 事業運營에 대해』(假題) ・ 發表者：森野 仁(MORINO Hitoshi) 東レ(株) 取締役 <韓國側> ・ 主 題：『韓日企業의 連帶現況 및 向後展望』 ・ 發表者：金 達 雄 LG電子Japan(株) 代表取締役 社長 - 自由討論 2. 第 2 Session (議題：아시아地域經濟連帶의 進展과 韓日關係) - 主題發表 <日本側> ・ 主 題：『FTA時代의 課題 - 原産地 規則과 企業-』 ・ 發表者：谷口正樹(TANIGUCHI Masaki) 日本機械輸出組合 通商·投資그룹 리더 <韓國側> ・ 主 題：『韓日經濟와 文化·人的交流』 ・ 發表者：奇 秉 泰 韓國JMAC(株) 經營顧問 - 自由討論	가. RECEPTION (日韓經濟協會 主催) 나. 午餐點談會 (日韓經濟協會 主催) 다. 産業施設見學 - 見學處：阪奈(케이한나)學研都市 內 施設見學 □ 오펜(株) 京阪奈(케이한나)이 노베이션센터 □(株)國際電氣通信基礎技術研究所 라.  옵션 프로그램 - 見學處：金閣寺(긴가꾸지)/龍安 寺(료오안지)/二條城(니조성)

年度 回次	期 場 所	兩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6年 第8回	11. 6~7  韓國 서울 (코엑스)	1. 韓國側 -유창무 체어맨 李洙喆 코디네이터 等 39名  2. 日本側 - 藤生 泰 체어맨 (ASO Yutaka) 清水敏一郎 코디네이터 (SHIMZU Koichiro) 等 31名	<p>1. 제 1 Session (의제 : 『한일미래 공동의 과제 : 저출산시대의 도래와 기업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06. 11. 6(월) 15:30~18:00</li> <li>-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li> <li>-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자 : 최 숙 회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대응』</li> <li>· 발표자 : 原田 泰(하라다 유타카) (株)大和總研 首席이코노미스트 『인구감소사회와 기업경영』</li> <li>· 발표자 : 岩切 真乃(이와키리 타카노) (株)東芝  멋진인생&amp;캐리어推進室長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東芝의 대응』</li> </ul> </li> <li>-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li> </ul> <p>2. 제 2 Session (의제 :자금의 한일양국 : 한국의 투자환경 현황과 한일합작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06. 11. 7(화) 09:00~11:30</li> <li>-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li> <li>-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자 : 오 응 친 KOTRA 주력산업유치TEAM장 『한국, 성공의 열쇠』</li> <li>· 발표자 : 안 성 략 삼성물산(주) 전자제조사업부 과장 『삼성물산 한일합작사례 -한국델타글라스-』</li> <li>· 발표자 : 帶刀 龍夫(오비나타 타메오) 韓國橫河電機(株) 會長 『합병에서 경영 투명화로의 변혁』</li> <li>- 사원,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Business Mind -</li> </ul> </li> <li>-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li> </ul> <p>3. 제 3 Session (의제 : 향후 한일산업무역회의의 운영방안에 대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06. 11. 7(화) 11:00~11:50</li> <li>-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li> <li>- 제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清水 敏一郎(SHIMZU Koichiro) (주)호텔오쿠라 대표취체역 부사장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선 취지 및 문제점』</li> <li>· 藤生 泰(ASO Yutaka) 藤生과파주시멘트(주) 社長 『일본측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li> <li>· 유창무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측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설명』</li> </ul> </li> </ul>	<p>가. 만찬교류회 (양국공동주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06. 11. 6(월) 18:30~20:00</li> <li>- 장소: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 1층 로즈룸</li> </ul> <p>나. 오찬교류회 (한일경제협회 주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2006. 11. 7(화) 12:00~13:00</li> <li>- 장소: 코엑스컨퍼런스센터 304호</li> </ul>

年度 回次	期 場 所	兩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7年 第9回	11. 12~13 日本 横浜 (Pan Pacific)	1. 韓國側 -柳 昌 茂 체어맨 李 洙 喆 코디네이터 等 40名 2. 日本側 -藤 生 泰 체어맨 (ASO Yutaka) 清水 敏 一 郎 코디네이터 (SHIMZU Koichiro) 等 35名	1. Session I : 低出産과 기업경영 米山 晋(YONEYAMA Susumu) (株)野村総合研究所 부장 2. Session II : 韓日間 최근의 투자현황과 사례 藤本 和彦(FUJIMOTO Kazuhiko) JETRO 과장대리 『한일 투자 개황』 上田 勝弘(UEDA Katsuhiko) 大垣精工(株) 사장 『최근의 한일 투자개황과 양국간 투자사례에 대해서』 成 美 淑 Ecotromix(株) 사장 『에코트로닉스사의 일본 투자사례』 3. Session III : 韓日 기업간 협력방안 吳 泰 憲 경희Cyber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일기업간 Win-Win 협력강화 방안』 金 仁 中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한일 산업클러스터 추진현황과 협력방안』	<산업시설견학> 1.일 시 : 2007. 11. 12(월) 14:15~16:30 2.견학처: (주)アルパック ULVAC,Inc. 3.참 석 : 한국측 대표단 15명



▣ (社)韓日經濟協會

- 住所 : 135-821 SEOUL特別市 江南區 論峴2洞 112-15番地 4F
- 電話 : (02) 3014-9888, 9866    ○ FAX : (02) 3014-9899
- Home page : <http://www.kje.or.kr>
- E-mail : [jhkim@kjc.or.kr](mailto:jhkim@kjc.or.kr)

▣ (社)韓國貿易協會

- 住所 : 135-729 SEOUL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무역센터 Trade Tower 47層
- 電話 : (02) 6000-5344    ○ FAX : (02) 6000-3097
- Home page : <http://www.kita.net>
- E-mail : [economy@kita.net](mailto:economy@kita.net)